
한일관계사학회

제193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1년 5월 8일(토) 오후 2~6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차 례

▶ 사회 : 한성주(강원대)

【제1주제】 18세기 후반 조일교섭 속의 재판차왜

발표 : 이형주(나고야대) 토론 : 허지은(서강대)

【제2주제】 17~19세기 조선 내 일본담배 유입과 유통

발표 : 신경미(동국대) 토론 : 장순순(전주대)

【제3주제】 일제의 식민지 조선 내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논의와 민족차별

발표 : 이주희(동국대) 토론 : 소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1. 시작하며

통상적으로 근세 조일관계는 이른바 ‘교린관계’, ‘선린우호’로 표현되고, ‘양국 우호의 사실’로 묘사되는 조선통신사의 왕래가 이 시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일본에 에도 막부가 성립되어 있던 1603년부터 1868년 사이에는 현재의 부산광역시 일대에 설치된 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양국 사이의 외교 질충과 무역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후하는 시기와는 달리 양국 간의 전면적인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시기에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왜관에서는 당연히도 갈등과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왜관에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서로 마주하는 양국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소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일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교린관계’, ‘선린우호’, ‘양국우호’란 위와 같은 토대 위에 성립되어 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양국 실무자들의 노력을 통한 관계의 유지 및 재생산이라는 부분에 주목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시기의 ‘평화나 우호는 그저 우연히 재수가 좋아 유지되어 온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¹⁾’을 것이다.

여기서 재판차왜(裁判差倭)²⁾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쓰시마 번에서 왜관으로 각종 명목을 부여하여 파견하던 사자, 즉 차왜(差倭) 중에서도 재판은 조일교섭을 사명으로 하는 사자로 알려져 있다. 재판은 그 파견 명목으로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①통신사 호행을 담당하는 信使送迎裁判, ②문위행 호행을 담당하는 譯官迎送裁判, ③공작미 지급기한연장을 담당하는 公作米年限裁判, ④그 외 사안을 담당하는 幹事裁判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목에 의한 것으로, 실제 재판은 부차적인 사명으로서 그때그때 쓰시마 번이 당면하고 있던 조선과의 문제를 교섭하는 임무 또한 명령받아 왜관으로 파견되었으며, 때로는 이 부차적인 사명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했다³⁾. 이러한 재판의 활동을 복원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260여 년간 조일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 그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선행연구는 주로 왜관 근무자의 직분과 역할을 소개한 연구 속에서 재판의 기원과 성립과정, 피임명자의 신분 변화, 재판이 맡았던 교섭사안의 종류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것이 많았다⁴⁾. 최근 들어서는 윤유숙에 의한 개별연구도 진행되어 재판의 업무분하나 18세기 후반 조일 통교의 쟁점과 전개 과정이 밝혀지기도 했다⁵⁾.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양적으로 충분한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왜관에서 이루어진 조일교섭 속에서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재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었다.

1)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년, xiv쪽.

2) 일본 측 사료에서는 보통 ‘裁判’으로 표기하거나 드물게 ‘催判’으로 표기하며 ‘さいはん’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 ‘재판’으로 간략히 표기.

3) 오사 마사노리(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第五十卷四号, 東洋學術協會, 1968년, 86-88쪽, 원문 일본어.

4) 오사 마사노리, 앞의 논문 ;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년, 원문 일본어 ; 홍성덕 「十七世紀 別差倭의 到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전북사학회, 1992년 ; 이해진 「17世紀後半 朝日外交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대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년.

5) 윤유숙 「조선 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2, 한일관계사학회, 2018년 ; 同 「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6, 한일관계사학회, 2019년.

먼저 오사 마사노리는 ‘다른 差倭가 여차하면 형식적인 외교의례의 수행만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에 비해, 裁判은 주로 교섭의 실제 면을 담당하여 쓰시마 조선외교의 실질적인 推進役⁶⁾이었다고 한다. 이 지적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差倭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왜관 관수(館守, 왜관을 통괄하는 직책) 또한 각종 조일교섭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만 하다. 다시 말해 이미 왜관에 상주하고 있는 관수가 조일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마 번은 재판까지 교섭에 투입하고 있던 것이다(가).

그리고 이해진은 ‘재판은 對馬藩의 이익을 대변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한 幕府와 對馬藩에 대해서 조선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였⁷⁾’다고 지적한다. 재판이 쓰시마 번의 役人이면서 정말로 조선을 대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일단 차치하고, 쓰시마 번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존재를 굳이 교섭에 투입한 것이 된다(나).

하지만 특히 18세기 이후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관수와 별도로 교섭에 투입될 정도로 조일교섭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쓰시마 번 내부에는 이미 1687년에 재판의 외교 관련 지식 부족과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했으며, 18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대부분 오랜 기간 내정 관련으로 근무해온 藩士들이 재판에 임명된 뒤 단 한 번의 파견으로 교대되는 경향을 보이었다⁸⁾(다).

종합하면 18세기 이후 쓰시마 번은, 이미 왜관에서 관수가 조일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선 측을 대변할지도 모르는데도(나), 그렇다고 해서 조일교섭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지도 않은 藩士들까지(다) 재판으로 임명하여 조일교섭에 투입하고 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얼핏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이후도 수많은 재판들이 왜관으로 파견되어 각종 조일교섭에 투입되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⁹⁾. 마찬가지로 재판에 대해서는 그들을 직접 운용해온 쓰시마 번에 의해 ‘쓰시마에서 재판을 파견해 두고, 양국의 여러 일을 처리하게 한다(對州ヨリ裁判役ノ者差遣置、兩間ノ諸用爲取扱候事)’라는 설명이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¹⁰⁾.

위의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18세기 이후 재판이라는 직책에는 관수와 구별되는 고유의 역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수와는 별도로 조일교섭에 투입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관수와 구별되는 재판 고유의 역할이란 무엇이었을까(가). 그리고 재판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선 측에 양보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았다는 것일까(나). 또한 재판이 수행하던 역할 중에는 재판이라는 직책 자체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있었다는 것일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설정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18세기 재판이 조일교섭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8세기 조일교섭 속에서 재판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상에서 얻어진 결과를 재판에 관한 연구의 일조로 삼고자 한다.

2. 東大廳東行廊 수리를 둘러싼 교섭의 흐름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는 1796년 11월부터 1797년 5월 사이에 이루어진 西館 東大廳

6) 오사 마사노리, 앞의 논문, 470쪽.

7) 이해진, 앞의 논문, 53쪽.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판에 임명되어 조일교섭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후반부터 정비 및 축적되기 시작한 기록류 등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줄고 「18世紀の倭館における日朝交渉と對馬藩の裁判役」(『名古屋大學人文學フォーラム』, 名古屋大學大學院人文學研究科, 2018년, 원문 일본어)을 참조.

9) 오사 마사노리, 앞의 논문, 482-490쪽의 표2를 참조하면 1607년부터 1870년까지 총 119회의 파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된다. 단순 계산으로 약 2.2년에 한번 꼴로 빈번하게 재판이 파견된 것이다.

10) 諸記録<合十一冊>(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對馬島 宗家文書, 소장문서번호: 6560, 이하 ‘국편XXXX’로 약기). 근대 초기의 문서로 추측.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사료 및 사료의 국역에 보이는 구두점, 밑줄, 괄호, 발화자 표시 등은 편의를 위해 인용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사료의 이체자 역시 정자로 변환하여 인용하였다. 이하 같음.

東行廊(第一船下行廊)¹¹⁾ 수리를 둘러싼 교섭이다. 이하에서 설명하듯 본 사례에서는 도다 다노모(戶田賴母)가 관수로서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면서 교섭을 맡고 있었고, 처음 재판으로 임명된 가와치 도쿠자에몬(河內德左衛門)은 관수와 협력하면서 교섭을 진전시킬 것을 명령받아 교섭에 투입되었다. 특히 도다는 네 번에 걸쳐 관수직을 역임하였고(제1기: 1779년 3월~1781년 6월, 제2기: 1787년 4월~1790년 5월, 제3기: 1793년 4월~1795년 10월, 제4기: 1796년 3월~1800년 12월) 관수 임기가 끝난 후에도 古館守로서 왜관에 몇 년간 더 체류하면서 역지통신 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본 사례의 특징은 역대 관수를 통틀어서 가장 풍부한 경험이 있던 도다 다노모가 이미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재판에 임명되어 조일교섭을 하게 된 가와치 도쿠자에몬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있다. 즉 이 사례는 쓰시마 번이 재판에 임명된 개개인의 경험과는 별개로 재판으로서 관수와 다른 부분에서 수행해 주길 바라던 별도의 역할이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東大廳東行廊은 조선 측의 비용으로 축조된 건물이었으며, 따라서 그 수리도 조선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¹³⁾. 왜관 측에서 쓰시마 번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측의 협력을 얻어 수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교섭이 있던 것이다. [표 1]을 참고하며 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1678년 초량왜관이 축조된 후, 東大廳東行廊은 1733년 1월에 한 번 전소되었으며 1740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개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6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한 번 수리가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약 25년째를 앞둔 1791년 8월 쓰시마 번은 신임 관수로 왜관에 부임한 오가와 누이노스케(小川縫殿介)를 통해 東大廳東行廊 수리를 요청하는 계문을 조정에 올려주도록 동래부 측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792년 11월 12일 동래부사 윤필병(尹弼秉)이 계문을 올려주었고, 1793년 1월 중순에는 조정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이 도착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흉년으로 인해 수리를 보류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관수 오가와와 교섭은 결실을 보지 못했고, 1793년 4월 도다 다노모(戶田賴母)가 후임 관수로 왜관에 부임하면서 東大廳東行廊 수리를 위한 교섭을 이어받게 되었다. 도다로서는 이번이 관수로서 3번째 임기였다. 도다 또한 왜관에 도착한 이래로 東大廳東行廊 수리를 요청하는 계문을 조정에 올려줄 것을 동래부사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1년여가 지난 1794년 5월에 이르러서야 동래부사 윤필병으로부터 올해 가을에 계문을 올려주겠다는 약속만 받아낼 수 있었다.

이후 약속대로 가을에 계문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던 1794년 8월, 가와치 도쿠자에몬(河內德左衛門)이 公作米年限裁判으로 왜관에 도착했다. 가와치는 그 사명대로 공작미 지급기한을 1795년부터 1799년까지 5개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명령받은 업무였으나, 이와 함께 ‘아무쪼록 착공에 이르도록 관수와 상의하여 시의적절하게 조선 측과의 교섭에서 꼼꼼히 재촉할 것(何分始役ニ至候様、館守申談、時宜ニ應、外向之掛合無手拔催促可被致候事)’ 또한 명령받아 왜관에 도착했다¹⁴⁾. 이후 1794년 9월에는 도다와의 약속대로 동래부사 윤필병이 계문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달되었고, 가와치는 10월부터 우선 공작미 지급기한 연장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그리고 11월 가와치가 훈도 김덕순(金德淳)과 별차 최창겸(崔昌謙)을 왜관으로 불러들여 東大廳東行廊 수리에 관한 계문과 공작미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을 재촉하면서, 가와치도 東大廳東行廊 수리 교섭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閏 11월 15일, 지난 9월에 올린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回下)

11) 초량왜관 西館의 三大廳을 쓰시마 번에서는 남쪽 해안에 가까운 순으로 각각 一特送屋, 參判屋, 副特屋이라고 불렀고, 一特送屋 중에서 남쪽 해안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第一船正官家라는 별명으로 칭했다. 東大廳東行廊 다시 말해 第一船下行廊이란 第一船正官家 앞의 행랑, 즉 남쪽 해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진 行廊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초량왜관의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로 가즈이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文藝春秋, 2002년, 65-74쪽, 원문 일본어)를 참조.

12) 도다 다노모의 관수로서의 활약에 대해서는 허지은 「근세 왜관 館守의 역할과 도다 다노모(戶田賴母)」(『한일관계사연구』48, 한일관계사학회, 2014년)을 참조.

13) 초량왜관에는 조선 측의 비용으로 축조된 시설과 일본 측의 비용으로 축조된 시설이 있었고, 처음 비용을 부담한 측이 그 이후의 보수비용도 부담했다고 한다. 초량왜관의 수리 실태에 대해서는 윤유숙 「18·19세기 왜관의 개건·수리실태」(『아세아연구』46(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년)를 참조.

14) 이외에도 쓰시마 번이 조선으로부터 수입하는 쌀과 禮單人蔘의 품질개선에 관한 교섭도 명령받았다.

이 양역(兩譯, 훈도와 별차)을 통해 왜관으로 전달됐다. 이때 조정의 답변이란 이번에도 흥년으로 인해 내년 보리 수확 시기까지 수리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가와치의 판단으로 양역과 도다 사이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3일 뒤인 閏 11월 18일 훈도 김덕순이 다시 한번 왜관을 방문하여 도다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도다가 면담을 거부하고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면서 이후 가와치가 교섭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6일 뒤인 閏 11월 24일에는 양역이 가와치를 방문하여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은 내년 여름까지 왜관 측이 계문 요청을 보류해 주기로 한다면, 자신이 그때 다시 계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훈도의 제안을 가와치가 받아들이며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이후 25일 혹은 26일¹⁵⁾에 가와치가 직접 도다와 의논하여 지난 24일에 가와치와 양역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도다도 수용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閏 11월 27일, 가와치가 별차 최창겸에게 도다 또한 훈도의 제안을 수용했으니 양역도 합의대로 이행해 달라고 전하며 교섭은 일단락되었다¹⁶⁾.

위와 같이 교섭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듬해인 1795년 3월 양역과 동래부사가 교대되었고, 결국 4월이 되어서야 신임 동래부사 윤장렬(尹長烈)의 명의로 東大廳東行廊을 수리해달라는 계문이 조정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한 달여가 지난 5월에는 조정으로부터 내년 봄에 착공할 것이라는 답변이 도착했고, 가와치는 이를 확인한 뒤, 1795년 6월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다. 다만 실제 東大廳東行廊의 수리공사가 착공된 것은 1796년 11월의 일이었다¹⁷⁾.

3. 관수 도다 다노모와 재판 가와치 도쿠자에몬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듯이 東大廳東行廊 수리를 둘러싼 교섭은 1794년부터 관수 도다 다노모에 더해 재판 가와치 도쿠자에몬이 추가로 투입되어 이 두 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히 閏 11월 18일 그때까지 교섭을 주도하던 도다가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자, 새롭게 가와치가 교섭을 이어받아 자신의 선에서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 1794년에 진행된 교섭을 다소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관수 도다 다노모와 재판 가와치 도쿠자에몬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와치가 재판으로서 교섭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특히 관수인 도다와는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1794년 5월 11일에 있었던, 도다가 동래부사 윤필병으로부터 올해 가을에 계문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재촉이다.

[사료1]

도다: 벌써 제가 왜관으로 온지 1년여가 되는데, 아직도 계문을 올리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훈도: 이 계문을 올린다고 해도 실익이 있겠습니까. (동래부사께서는)혹시 지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계문을)보류하고 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조금 더 (계문 요청을)보류해 주십시오...

도다: 通交間에 불시 御用이 발생하는 일은 이전부터 자주 있었던 일로, 御用은 御用, 修理는 修理이므로, 御用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 約定한 일을 내버려 둘 수 없으

15) 도다와 가와치가 의논을 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의논의 결과를 ‘하루이틀 보류했다가 도쿠자에몬 쪽으로 별차를 불러(一兩日見合、德左衛門方江別差招呼)’서 통보한 것이 27일이었으므로, 25일 혹은 26일로 추정된다.

16) 이상 1794년 閏 11월의 교섭은 河內德左衛門『裁判記錄 參 往復狀』(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5, 이하 ‘국회XXX-X-XX’로 약기)의 1794년 閏 11월 28일 자 서장에 의거함. 이하에서도 따로 밝히지 않는 한 1794년 閏 11월에 관한 사료는 위의 사료에 의거함.

17) 1795년 5월 내년 봄에 착공을 하겠다는 조정의 답변이 있는 후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1792년 11월부터 1795년 5월 사이에 실제로 동래부사가 계문을 올리고, 조정에서는 이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관건으로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邊例集要』, 『典客司日記』 등 조선 측 사료에서는 해당시기에 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들 사료에서 보는 한 東大廳東行廊 수리에 관한 계문이 처음 조정에 보고되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795년 11월 18일의 일이었다.

며, 三大廳六行廊의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자들의)주거에 지장이 생기는 일은 뻔한 일입니다...18)

위는 도다가 자신이 왜관에 도착하여 계문을 요청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계문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표하며 훈도를 재촉한 것이다. 훈도는 동래부사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러 계문을 올리지 않고 있던 것으로 생각한대, 지금 계문을 올려도 실익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도다의 입장은 ‘御用은 御用, 修理는 修理’라는 것이었다. 당시 왜관에는 히라타 하야토(平田隼人, 平暢常)가 通信使議定差倭(議聘使)로 1791년 12월부터 1795년 2월까지 체류하며 역지통신 교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쓰시마 번 측이 갑자기 선례에 없는 사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東大廳東行廊의 수리 공사를 요구해도 조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래부사는 판단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다는 본 사안과 여타 사안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원칙주의적이고 냉철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었다.

위의 재촉이 있고 난 뒤인 5월 19일 동래부사 윤필병으로부터 가을에 계문을 올리겠다는 약속이 전달되었고, 9월 6일에는 드디어 약속대로 계문을 올렸다는 소식이 왜관 측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위의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閏 11월 9일 도다는 쓰시마 번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사료2]

東大廳東行廊의 착공에 대해 지난 9월 계문이 올라갔으므로, 답변의 도착과 관련하여 재판과 상담하여 끊임없이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변이)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 앞으로는 재판이 마침 (왜관에)건너와 있으므로, (쓰시마 번에서)전부 재판에게 이 御用을 맡겼다는 방식을 취하면 상대방(=동래부 측)에게도 타격이 생긴다는 점에서(悉皆裁判江右御用被仰付与申御仕掛ニ至候ハ、彼方ニ茂痛手生シ候所方) 혹은 御用이 진행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19)

도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맡고 있던 교섭을 대외적으로는 재판에게 일임되었다고 해둠으로써 교섭을 진척시키려 하고 있었다. 여기서 교섭이 재판에게 일임되었다고 했을 때 ‘상대방(=동래부 측)에게도 타격이 생긴다는 점(彼方ニ茂痛手生シ候所)’이 무엇인지 해당 사료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기인 1799년 재판으로 파견된 후루카와 마타사부로(古河又三郎)가 쓰시마 번으로 보낸 서장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후루카와가 쓰시마 번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그의 전속 조선통사였던 스야마 야시치로(陶山彌七郎)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교섭을 진척시키기 위해 훈도에게 ‘(御用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재판께서는)결코 귀국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 만일 御用 때문에 장기체류가 된다면 당신들에게도 이것저것 곤란한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決而歸國ニ不相成、若萬一右之御用ニ付長逗留ニ相成候ハ、其元達ニ茂彼是與難儀之次第茂可有之哉ニ相考候)’²⁰⁾고 재판이 장기체류를 할 수도 있음을 전략적으로 암시한 적이 있으며, 이를 들은 훈도도 ‘(스야마의)謀言이 무서웠는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속 조선통사를 통해 계속 전달해 왔다(謀言ニ恐レ候ニ哉、今程専力仕居候段御用掛通詞を以追々申遣)’²¹⁾고 한다. 또한 후루카와는 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저이지만 役位를 이용해서라도 (요청을 들어주도록)추진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私儀乍不才御役位を以成共周旋仕度奉存罷有候)’²²⁾라고도 덧붙이고 있다. 이 시기 재판은 고의적인 장기체류를 유용한 교섭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판이라는 역직이 가진 힘(役位)이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판이 왜관에 장기간 체류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정에서도 장기체류에 따른 접대비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재판에게는 정해진 체류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 체

18) 『分類紀事大綱』(국편4541) 1794년 5월 20일 자 서장.

19) 『分類紀事大綱』(국편4541) 1794년 閏 11월 9일 자 서장.

20) 古河又三郎『裁判記録 四 往復狀控』(국회WA1-6-35) 1799년 10월 8일 자 서장.

21) 古河又三郎『裁判記録 四 往復狀控』(국회WA1-6-35) 1799년 10월 9일 자 서장.

22) 위와 같음.

류하면 할수록 조선 측의 접대비용도 상승했다. 따라서 만일 재관이 장기체류를 해버리면 이를 주선하지 못한 양역뿐만 아니라 동래부사도 문책을 받았을 수 있었다²³⁾. 그렇기 때문에 동래부 측으로서도 재관이 장기간 체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을 것이다.

다시 1794년으로 돌아와서 위와 같은 예에 비추어 볼 때, 도다가 언급한 ‘전부 재관에게 이 御用을 맡겼다는 방식을 취하면 상대방에게도 타격이 생긴다는 점’이란, ‘재관에게 수리 교섭이 일임된 상황에서 재관이 교섭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체류를 해버리면, 이 일로 자신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점이 동래부 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임기가 정해진 관수와 달리 체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재관의 특성²⁴⁾에 유래하는 교섭 카드였다. 물론 사료가 도다의 실제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모두 차치하더라도 일단 왜관 측으로서는 ‘전부 재관에게 이 御用을 맡겼다는 방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동래부 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해 두고 싶다.

다음으로 閏 11월 15일을 보도록 하자. 이날은 지난 9월 6일에 올린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흥년으로 인해 내년 보리 수확 시기까지 수리를 보류)이 양역을 통해 왜관으로 전달된 날이었다.

[사료3]

양역이 왜관으로 들어와서 다노모에게 가겠다고 하기에, 무슨 일로 대면하려 하는지 (가와치가 조선통사를 통해) 물어보았더니...(조정의 답변이 도착했는데 내년 보리 수확 시기까지 공사를 보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었으므로, 바로 (양역과 도다가) 대면을 하면 (도다가 양역을) 責諭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뒤에 지장이 생겨, 이 일만 몰아세운다고 해도 당장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가와치가) 조선통사를 통해 훈도에게 전달하길, 오늘 (도다와) 대면하겠다고 했는데, (도다는) 하루이틀 사이의 추위로 이전부터 앓고 있던 곳이 안 좋아졌으니, 급한 일이면 조선통사를 통해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보류하고, 이쪽에서 오라고 할 것이니 이대로 대답해 두도록(했다), 그리고 당신들(=조선어통사)이 훈도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관수는 이번 추위에 이전부터 앓고 있던 곳이 안 좋아져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면을 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답변으로는 관수께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오는 몇 월쯤 착공을 하겠다는 대답이 없으면 결코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면이 없는 것은 다행이니, 다시 동래부로 올라가시어, 관수에 대한 대답을 왜관에 들어가 전어관(=조선통사)들과 이야기도 해보았으나 이 회하의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관수께서 납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다시 계문을 올리시도록 동래부사께 말씀드리고, 결정된 (동래부사의) 답변이 있도록 (양역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조선통사와 양역이) 상의하도록 (조선통사에게) 말했더니, 훈도가 대답하길, 해결되지 않았지만 회하의 내용을 알려 두어야 하기 때문에 (도다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 것인데, 마침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하나하나 맞으므로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이틀 내에 동래부로 올라가 모두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것이니, 그때까지는 관수와 대면하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조선통사 두 명으로부터 (가와치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올린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을 도다에게 전달하기 위해 훈도 김덕순과 별차 최창겸이 왜관을 방문하여 도다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왜 면담을 요청하는지 가와치가 미리 조선통사를 통해 살펴보았더니, 드디어 조정의 답변이 동래부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도 공사를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가와치는 도다의 건강 상태를 핑계로 급한 일이면 조선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라면 일단 대면을 보류하라는 식으로 양역과 도다의 대면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때 가와치의 판단 근거가 된 것은, 도다와 양역이 직접 대면을 하면 도다가 양역을 책유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무언가 마찰이 생기면 교섭에 지장이 생길 것이고, 이 일만 가지고 양역을 몰아세운다고 해도 당장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어서 가와치는 조선통사에게 양역이 다시 동래부로 올라가 동래부사로부터 계문을 다시

23) 이해진, 위의 논문, 44쪽.

24) 17세기 후반, 재관의 체류 기한을 110일로 한정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이해진, 앞의 논문, 42-49쪽).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도록 양역과 상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동래부 측이 東大廳東行廊의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도다에게 보여줌으로써 도다와 양역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閏 11월 9일 도다는 가와치의 재판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동래부 측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교섭을 진척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다의 바람과는 달리 가와치는 동래부 측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3일이 지난 閏 11월 18일은 훈도가 다시 왜관을 방문하여 도다와의 면담을 신청한 날이었다. 이때 도다가 조선통사를 통해 훈도 김덕순에게 지난 15일 이후의 경과를 묻자, 김덕순은 조선통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료4]

(동래부사로부터)관수가 한 말²⁵⁾은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다시 계문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 이제 와서 나(=동래부사)로부터 (부탁한다)라고 하면 관수에게 (계문 요청을 보류해 달라는 것을)부탁할 구실도 없으니 당신이(=훈도) (관수에게)가서 부디 쓰시마 번에도 잘 말해주도록 간절히 부탁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도저히 이렇다 할 관수께 말씀드릴 것도 없어서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동래부사의 말씀을 문서(書付)에 적어서 지참하고, 이것으로 부디 이번은 납득해 주도록 (관수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도다는 다시 조선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김덕순에게 전달했다.

[사료5]

조선 측이 절박하다는 사정에 관해 지금 문서를 받아 둔다면, 이곳(=왜관)에서 꼼꼼히 교섭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쓰시마 번에게도 잘 보여줄 수 있겠지만, 御用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실익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을 (훈도가)요청했고, 따라서 오늘 대면해도 조금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문서에 관한 건은 어찌되었든 전해 두어야 할 것이니, 양역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재판에게 지참하여 부탁한다면 재판에게도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는 조금도 이쪽(=왜관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며, (문서를)제출한 뒤 수령할지 말지(의 판단)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난 15일 가와치는 조선통사를 통해 양역이 동래부사로부터 다시 계문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해 두었다. 하지만 18일 훈도 김덕순이 가져온 동래부사의 답변은 ‘아무래도 지금 다시 계문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 즉 조정으로부터 내년 보리 수확 시기까지 공사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이 전달된 이상, 곧바로 다시 공사를 요구할 수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대신 김덕순도 동래부사의 전언을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문서화하여 가져오는 등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도다는 이 문서를 본인이 받아 둔다고 해도 교섭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었고, 오늘 만나도 바뀔 것은 없다고 하여 결국 면담을 거절해버렸다. 양역이 동래부사로부터 곧바로 다시 계문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오지 않는 한 도다와 양역 사이의 대화는 재개되기 힘들게 된 것이다.

다만 도다는 그렇다고 해서 문서를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으니 가와치에게 가져가서 부탁해보면 가와치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은 김덕순이 가와치를 ‘오늘 안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정(今日迄者難罷出事情)’이 있었기 때문에 둘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가와치는 훈도에게 ‘이쪽은 언제든 괜찮으니 다음에 왜관에 들어오면 대면할 것입니다(此方者何時茂不差支候間、重而入館之上可令對面)’라고 전달하고, 도다와는 ‘앞으로는 도쿠자에만 쪽에서 (교섭을)취급해야 할 것(此上者德左衛門方ニ而取扱可然)’이라고 상의를 해두었다. 지금까지 양역과 교섭을 해오던 도다가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자, 가와

25) 실제 지난 閏 11월 15일 동래부사가 다시 계문을 올리도록 요청한 것은 관수 도다가 아닌 재판 가와치였다. 다만 15일은 양역이 관수나 재판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조선통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재판과 대화를 했으므로 본인은 도다와 대화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

치가 나서서 새로운 대화 창구가 되어 교섭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김덕순이 가와치를 찾아간 것은 6일이 경과한 閏 11월 24일의 일이었다. 이날은 훈도 김덕순과 별차 최창겸이 위의 문서를 지참하여 가와치를 방문했다(이날의 상제는 후술). 그리고는 동래부사는 현재 ‘부디 내년 여름 보리 작황을 가지고 계문을 올리도록 조치할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보류(何分來夏麥作之模樣を以啓聞有之候様取計可申候故、其間之處何分御見合)’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부디 (문서를)읽어 주시고, 그 뒤 (내년까지 계문 요청을 보류하도록)관수께 부탁해 주신다면, 마침내 신임 훈도가 (동래부로)내려와서 전임 훈도(=김덕순)와 교대한 뒤²⁶⁾에도 빈틈없이 힘을 합쳐 서둘러 계문이 올라가도록 여러모로 동래부사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何分御覽被下、其上館守公御頼談被下置候ハ、頼而新訓導罷下り候上、古訓導交代後たり共、無拔目力を合、早々被致啓聞候様、何分府使江申出候様可仕候)’라고 제안했다. 가와치도 처음에는 양역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끝내 이들의 부탁에 못이기고 문서를 받아서 읽어보고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때 양역은 가와치에게 ‘동래부사께서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계문을 올리기 어렵습니다(府使御難儀之譯ニ方又々啓聞難被差立)’, ‘조선은 흉년이라 최근에는 암행어사 등까지 각 도를 돌아다니며 백성의 고난을 구제하려 하는 것이 조정의 정세이므로, 다시 계문을 올려 달라고는 저희가 동래부사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外向凶年ニ付、近比者隠し目付等迄各道ニ被差廻、百姓之難儀を救被申候朝廷之勢ニ御座候得者、押返し啓聞被差立被下候様ニ者、我々方府使江難申出御座候)’ 등 동래부사와 자신들이 왜관 측의 계문 요청 때문에 크게 곤란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호소했다. 그리고 가와치는 이러한 사정을 ‘전부 못 들은 것으로 할 수 없(全聞捨可申様無御座)’었다고 한다. 결국 이로써 왜관 측이 내년까지 계문 요청을 미루는 대신, 훈도는 내년에 신임 훈도와 임무 교대를 한 뒤 계문이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합의점이 도출된 것이다.

가와치가 내년까지 계문 요청을 보류해 달라고 도다를 설득한 것은 閏 11월 25일 혹은 26일이었다. 사료의 한계로 가와치가 어떻게 도다를 설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료의 표현을 빌리면 ‘여러 가지로 핑계를 들어 이야기(色々辯を設、申出)’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와치의 설득에 도다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사료6]

이 내용을 쓰시마 번에 보고하면 분명 껄뽀하다고 질책 또한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래부사 및 훈도가 이렇게까지 곤란에 처했다는 사정을 못 들은 것으로 하기 힘들고, 특히 당신이 (東大廳東行廊 수리 교섭을)다루면서 현재 계문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교섭이 느슨해졌다고 하는 것(=내년까지 계문 요청을 유예)인데, 앞으로 이 御用은 당신께 맡기겠으니, 내년이 되면 서둘러 계문이 올라갈 방도를 다하시겠습니까...

도다는 일단 동래부사나 훈도가 곤란에 처했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계문 요청을 내년까지 미루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섭 일체를 가와치에게 맡기겠으니, 양역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가와치가 노력해달라는 것이었다. 즉 도다는 어쩔 수 없이 가와치와 양역 사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인정하기는 하겠으나,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떠난 일이니 가와치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었다. 도다는 스스로 교섭에서 물러날 때까지 가와치와 반대 입장이었다.

이날 가와치와 재판이 상의한 내용은 閏 11월 27일 가와치가 별차 최창겸을 왜관으로 호출하여 ‘앞으로 이 御用に 관한 것은 저에게 맡기겠다고 관수께서 말씀하셨고, 이에 더해 내년 봄이 되어 御用이 진척되도록 하는 교섭은 제가 맡게 되었으니, 이 점을 더욱 당신들(=양역)이 잘 이해하시고, 신임 훈도가 (동래부로)내려온 뒤 조금도 이변이 없도록 힘을 다해 상의해 주십시오(以來右御用向拙者江相委候由、館守被申聞、其上來春ニ至、御用相進ニ候

26) 훈도는 900일로 임기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김덕순 본인이나 왜관 측에서는 훈도의 임무교대 시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1795년 2월 시점에서 ‘해가 밝아 신임 훈도가 동래부로 내려오는 일을 이래저래 조금은 보류하고 있었는데, 점점 날이 연기되고 있다(年明新訓導下來彼是をも少し者相見合罷有候處、段々日延ニ相成候)’라는 언급(河內德左衛門『裁判記録 參往復狀』, 국회WA1-6-35, 1795년 2월 11일 자 서장)이 있는 것을 보아, 김덕순이 ‘마침내 신임 훈도가 내려와서 전임 훈도와 교대한 뒤’라고 한 것은 1795년 초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樣、掛合之儀拙者請持居候事故、其處尙又各能々被相心得、新訓導下來之上、少も無違變候樣、折角可被申談候)’라고 전달했고, 이로써 교섭은 내년엔 있을 훈도의 임무 교대까지 일단은 계문 요청을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상 1794년 교섭 과정을 통해 관수 도다 다노모와 재판 가와치 도쿠자에몬을 비교해보았다. 먼저 관수 도다 다노모는 교섭에 있어서 원칙주의적이고 냉철한 입장을 보이었으며(사료1, 사료5), 가와치가 맡은 재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래부 측에 압박을 가하려 하거나(사료2), 교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양역과의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기도 했다(사료5). 그리고 가와치가 양역들과의 사이에서 왜관 측이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를 하자 이번에는 교섭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리는(사료6) 등 시종 냉정하고 강경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재판 가와치는 재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래부 측에 압박을 가하려던 도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섭에 관여하고 있었다. 또다시 공사를 보류하겠다는 조정의 답변이 왜관으로 전달되던 閏 11월 15일, 가와치는 이 답변을 양역이 도다와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면 양쪽 사이에 좋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사료3). 또한, 閏 11월 18일에는 도다가 양역과의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자, 자신이 새로운 대화 창구가 되어서 교섭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도다 선에서 이미 한 번 거절당한 동래부 측의 부탁을 자신이 수락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閏 11월 24일), 결국 도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섭을 일단락 짓는(閏 11월 25일 혹은 26일 및 27일) 등 교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가와치는 도다의 바람처럼 자신이 맡은 재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래부 측에 압박을 가해서 교섭을 진척시킬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동래부 측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하며 교섭에 임하고 있었다.

4. 재판의 ‘役儀’

그렇다면 가와치는 재판이라는 직책만으로도 동래부 측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래부 측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도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교섭을 일단락 짓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 이는 그저 단순히 가와치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의한 것이었을까. 본 장에서는 ‘役儀²⁷⁾’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와치가 양역이 지참한 문서를 수령하기로 하고 그들의 부탁을 수락한 閏 11월 24일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이날 양역과 가와치가 나눈 대화의 전반부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7]

양역: (동래부사로부터)부디 내년 여름 보리 작황을 가지고 계문을 올리도록 조치할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보류해달라고 부탁하도록, 또한 동래부사께서 부탁할 면목도 없으므로 우리들(=양역)이 힘을 써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두 분(=兩公樣, 관수와 재판)께 부탁을 드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얼마 전에 관수께 가서 부탁드리려 했으나 그때까지 (관수가)계속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이제 와서 또다시 작공을 보류해달라고 부탁드릴 구실도 없었고, 그런데 ①당신(=가와치)의 役儀 때문에, (당신으로)정해서 상세히 부탁을 드립니다(御自分樣御役儀ニ付、御見立申、委細御頼申上候). 다만 이 부탁을 드리는 사정은 (구두로 하기에는)길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여 지참해왔으니, 부디 (문서를)읽어 주시고, 그 뒤 관수(=도다)께 부탁해 주신다면, 마침내 신임 훈도가 (동래부로)내려와서 전임 훈도(=김덕순)와 교대한 뒤에도 빈틈없이 힘을 합쳐 서둘러 계문이 올라가도록 여러모로 동래부사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알았습니다. ②當役(=재판)인 저이기 때문에 雙方順便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當役之拙者故、雙方順便取扱候者當然之儀ニ付), 그

27)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휘이지만, 사료에서 가와치가 직접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日本國語大辭典』第二版에서는 ‘役儀’를 ‘やくめ, つとめ, 任務, 職掌, 職分’이라고 정의한다. 이 중 ‘やくめ’는 ‘役으로서 다해야 할 일, 주어진 일, 職責, 職分, 役儀’로 정의하고 있으며, ‘つとめ’는 ‘열심히 힘쓰는 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 義務, 責務’로 정의하고 있다.

대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이제 와서 조정으로부터 흥년이니 보류하도록 답변이 왔다고 하면, ③이것은 동래부사가 계문을 잘못 올린 것으로도 보이며, 이 점은 여러분과 저도 같은 役儀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是者東萊啓聞之御仕損之樣ニ茂相見候、其處各ニも拙者茂役儀同様之事ニ而、甚以笑止に存候). 애초에 관수도 (여러분이)알고 계시듯이 3번째 임기이며, (조선관련 업무가)미숙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없이 정성스럽게 교섭을 해 왔는데, ④관수의 마음 속도 좋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직무의 성격 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館守心中茂如何敷、右申述候通、拙者役柄ニ而者甚以氣毒ニ存候). 더욱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라면 쓰시마 번에 보고를 올릴 구실도 없으므로, 곤란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계문이 서둘러 올라갈 수 있도록 동래부사께 말씀해 주십시오...쌍방이 곤란한 사정을 비교해보면, 동래부사께서 우선 연간 民役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신 다음에 계문도 올린 것이므로, 이 부분은 (동래부사가)급히 주시고 계문을 올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래부사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객사가 大破되어 이미 (사자의)주거도 힘들 정도이고, 약정한 연한이 차서 마침내 30개년이 되는데, 흥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일은 ⑤貴國으로부터 我國에 대해서는 貴國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저의 役儀로서는 雙方順便을 생각해야 할 일이므로(貴國方我國ニ對シ候而者、貴國之御爲ニも不宜儀与存候、此所も拙者役儀ニ付、雙方順便之儀相心得不申候而難叶事故), 여러분께 의견을 묻습니다. 부디 서둘러 계문이 올라가서 착공이 되도록 동래부사께 간절히 요청하고, 여러분도 힘을 다해 일해 주십시오...

가와치는 자신이 재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 즉 ‘재판의 役儀’에 대해 ‘雙方順便을 취급(雙方順便取扱)’하는 것(②) 또는 ‘雙方順便을 생각(雙方順便之儀相心得)’해야 하는 것(⑤)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雙方順便이란 당연히 조선 측(동래부 측)과 일본 측(쓰시마 측) 모두 문제없이 편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가와치는 재판에 대해 양측이 문제없이 편한 상태로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직책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교섭이 원하는 대로 진척되지 않아 왜관 측 관수의 심중이 어수선한 것은 물론이고(④), 동래부 측 동래부사가 계문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여도(③) 어느 한쪽이 順便하지 않게 되어 雙方順便이 성립되지 않게 되므로 재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수리 공사가 연기되면서 쓰시마 번으로서의 왜관에 파견하는 사자의 주거에 지장이 생기고, 관련해서 조선으로서는 조정의 체면이 손상되면(⑤) 양쪽 다 順便하지 않게 되어 雙方順便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 점을 생각해서 다시 계문을 올려 달라는 것이 가와치가 처음 양역의 부탁을 거절한 논리였다.

하지만 양역도 물러서지 않았고, 재차 가와치에게 문서를 읽어본 뒤 도다와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못이긴 가와치는 결국 문서를 받아서 읽어보고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료8]

동래부사께서 곤란하시다는 사정, 그리고 여러분(=양역)이 곤란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이 착공에 관한 교섭 건에 대해 여러모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음대로)취급해서는 안 되는 일로, 때에 따라서는 쓰시마 번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만, ⑥저의 役儀로는 동래부사께서 곤란에 처했다는 사정을 전부 못 들은 것으로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훈도는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근무해 왔는데, 임무 교대를 앞두고 이 일은 이쪽(=가와치)에서 취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 동래부사의 형편과도 관련하여 이래저래 못 들은 것으로 하기 힘드니(拙者役儀ニ付、東萊御難儀之事情全聞捨可申樣無御座、其上訓導儀者是迄無別條被相勤、交代際ニ臨ミ、右之一事此方取扱不相成候段申切候時者、府使之首尾合ニ茂可相拘、旁難聞捨候ニ付), 이 문서를 가지고 여러모로 관수와 상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는 이날 대화의 후반부이다. 이번에는 결국 가와치가 양역의 부탁을 수락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雙方順便을 추구해야 하는 자신의 役儀 상 동래부사와 양역이 곤란에 처한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 부탁을 수락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었다(⑥). 즉 어느 한쪽이라도 順便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양쪽 다 順便한 상황인 雙方順便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재판의 役儀라고 가와치는 이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가와치는 동래부 측의 제안을 거부할 때나 수락할 때나 항상 철저하게 위의 이해에 입각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가와치의 재판에 대한 이해는 가와치가 스스로 설정하여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도다와 교섭을 진행해 오던 양역도 이날 가와치를 찾은 이유를 가와치가 맡은 재판의 役儀 때문(御自分様御役儀ニ付)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①). 양역들은 대화 창구를 닫아버린 도다를 설득하는 대신, 가와치라면 재판의 役儀상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래부 측의 양역도 재판의 役儀에 대해 가와치와 유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재판은 관수와 다르다고 보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위의 대화를 보면, 재판과 양역 사이에는 서로 같은 役儀를 갖고 있다는 일종의 동질감이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던 것처럼 보인다(③). 각자 소속은 다르지만, 재판이나 왜 학역관은 모두 雙方順便을 추구해야 하는 직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재판의 役儀에 대한 이해가, 위와 같이 동질감이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던 소수 그룹 사이에서만 통용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閏 11월 25일 혹은 26일에 가와치가 도다를 설득했을 때, 가와치는 우선 도다에게 ‘동래부사는 물론 양역이 곤란해 처했다는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문서를 보여줬다(東萊者素リ各難儀之事情、具ニ申述、書付を以入披見)’고 한다. 그리고 이에 도다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사료9]

⑦당신이 재판이기 때문에 동래부사 및 임역(=양역)이 곤란해 처한 사정을 못 들은 것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貴様裁判役ニ付、東萊并任譯難儀之事情難被聞捨譯を以被申聞候趣一々致承知候).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주전을 한다면 동래부사나 조선조정의 형편은 괜찮아질 것이고 그 점은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수나 쓰시마 번에 대해 변명이 안된다는 점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館守・御國向ニ對シ不相濟所者御構無之候哉). 이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도다는 가와치가 재판인 이상 동래부 측이 곤란에 처한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는 납득하고 있다(⑦). 하지만 가와치가 조선 측 사정을 배려해 줌으로써 거꾸로 관수나 쓰시마 번의 사정이 나빠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雙方順便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와치도 ‘이 대답에는 매우 곤란스러웠(此返答ニ者甚以致迷惑)’지만 ‘여러 가지로 핑계를 들어 이야기(色々辯を設、申出)’했다고 한다. 도다 또한 재판의 役儀란 자신과 달리 雙方順便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 점을 역이용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관이라는 현장이 아닌 이들을 지휘하는 쓰시마 번 당국의 생각은 어땠을까. 지난 閏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일련의 교섭 과정은 도다와 가와치의 連名으로 작성된 閏 11월 28일 자 서장을 통해 家老 다와라 군자에몬(俵郡左衛門)과 다지마 겐모쓰(田嶋監物)에게 상세히 보고되었다. 물론 가와치의 단독 재량으로 내년에 있을 훈도의 임무 교대까지 일단은 계문 요청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점도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12월 19일 자 서장으로 왜관에 전달되었는데 다음은 그 전문을 인용한 것이다.

[사료10]

간단하게 편지를 드립니다. 第一船行廊(=東大廳東行廊)를 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달 28일(=閏 11월 28일) 서장을 통해 계속해서 교섭 한 내용을 자세히 보내주시어 삼가 들었습니다. 이번은 고작 한 채에 관한 일이므로 계속 (조선에)홍년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 짓는 일이라 한들 안 될 것은 아닌 일입니다. 겨우 이 정도의 수리조차 여러 가지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大修理(=大監董)를 해야 할 시기라도 되면 이것 또한 커다란 일이므로, 무엇이라고 (핑계를 대면서)시간을 끌 것인지 예상도 안 됩니다. 이미 25년째에 수리를 하겠다는 約條가 있는 것을 30년으로 연기시키고, 특히 (수리해야 할 건물)이 수 곳이 생기면 더욱 40년 50년까지 연기시키지는 않겠으나, 만일 이와 같이 된다면 어찌 할 수 없게 되니, 마침내 재판까지 (왜관에)과견해 두었으므로, 앞으로 여러모로 노력하여 御用이 서둘러 해결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십시오. 또한 이 일은 재판에게 맡기셨으니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任官(=양역)들에게 말해야 할 것은, 下行廊(=東大廳東行廊) 수리에 관해 이전부터 계속 지시한 것도 있는데 착공을 이래저래 연기시켰으므로 이전에 재판

(=가와치)을 과견할 때 이 일의 상세를 (재판에게)다시 말해 두었는데, 아직도 착공될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約條를 이렇게 연기시키다니 대단히 패썽한 마음가짐이라고 엄하게 (쓰시마 번에서 도다와 가와치에게 교섭을 진행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질책을 하셨으므로, 이 이상 연기시킨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예상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최근 이것저것 쓰시마 번에도 잘 말해달라고 한 것은 일단 차치해 두었다고 말해 두시고, 더욱 교섭에 힘을 쓰십시오. 이상 삼가 말씀 드립니다.

12월 19일 다지마 겐모쓰
 다와라 군자에몬

도다 다노모 귀하
가와치 도쿠자에몬 귀하

위의 답변을 살펴보면 다지마와 다와라는 우선 전반부에서 아직도 착공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둘러 수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양역에 대해 항의해야 할 내용과 함께, 착공이 연기되면서 재판과 관수가 질책을 받았다고 할 것, 쓰시마 번에 잘 말해달라고 한 것은 보류 두었다고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상의 전문을 살펴봐도 가와치가 지난 閏 11월 24일 자신의 役儀 때문에 동래부사 및 양역이 곤란에 처했다는 것을 못 들은 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문 요청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질책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가와치가 도출해낸 합의안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추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²⁸⁾. 가와치가 갖고 있던 재판의 役儀에 대한 이해는 교섭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부에서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던 것이었다.

종합하면 가와치는 재판의 役儀에 대해 雙方順便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②, ⑤), 이러한 이해에 따라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③~⑥). 더욱이 이러한 이해는 가와치 본인뿐만 아니라 관수(⑦)나 왜학역관(①)은 물론, 쓰시마 번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던 바였다([사료10]). 따라서 가와치가 갖고 있던 재판의 役儀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 조일교섭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지극히 당연한 이해였다. 이에 더해 관수(⑦)나 왜학역관(①)의 발언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이 재판의 役儀란 확실히 관수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 재판이 조일교섭에서 갖는 고유의 역할이란 雙方順便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재량으로 일정 부분 동래부 측에 양보하는 것 정도는 이해될 수 있는 범위의 일이었다.

가와치가 동래부 측과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이를 가지고 도다를 설득하기도 했던 것은, 애초에 가와치가 임명된 재판이란 직책의 役儀가 원래 그러한 것이었고, 가와치는 그저 그 役儀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도다의 바람과는 달리 가와치가 재판의 役儀에만 충실했던 것은 가와치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작용한 것일 테지만, 가와치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재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동래부 측에 압박을 가하며 교섭을 진척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도 다시 상기해두고 싶다.

5. 마치며

이상 18세기 후반의 조일교섭 사례를 통해 해당 시기 조일교섭에서 재판이 수행하고 있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A)이 시기 재판이 기본적으로 본래 수행해야 했던 역할이란 雙方順便을 추구하는 일, 즉 조일교섭에서 쓰시마 번 측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B)그리고 관수와 달리 재판은 그 직책을 이용해 조선 측에 압박을 가해서 교섭을 진전시키는 역

28) 이 서장에서 다지마와 다와라가 ‘御用이 서둘러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하에 지시한 사항은 閏 11월 24일의 합의를 무효로 하고 바로 즉시 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 서장은 12월 27일 도다와 가와치가 확인했으며(河內德左衛門『裁判記録 參 往復狀』, 국회WA1-6-35, 1794년 12월 27일 자 서장), 가와치가 그 지시에 따라 교섭을 재개한 것은 1795년 2월 6일이었다(위의 사료, 1795년 2월 11일 자 서장). 그리고 2월 6일에 처음으로 교섭을 재개했다는 보고가 있는 후, 가와치는 쓰시마 번으로부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지 않았다(위의 사료, 1795년 3월 13일 자 서장). 즉 12월 19일의 서장을 통해 내린 지시는 閏 11월 24일의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추후 혼도의 임무교대에 즈음해서 교섭을 재개할 때를 대비하여 내린 것이었다.

할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이 조일교섭에서 재판이 갖고 있던 관수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역할 내지는 영역이었다.

1791년부터 수년째 진전이 없었던 東大廳東行廊 수리 교섭을 맡고 있던 관수 도다 다노 모는 마침 재판 가와치 도쿠자에몬이 왜관에 체류 중인 것을 호기로 삼아 재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도 타격이 생(彼方ニ茂痛手生シ)’기게 하여 교섭을 진전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가와치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이에 동조해서 교섭을 진척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다의 바람과는 달리, 가와치는 雙方順便을 추구해야 한다는 재판 고유의 役儀에 충실하며 동래부 측과 왜관 측의 원만한 관계를 의식하는 한편, 교섭 과정에서 일부분 동래부 측에 양보하기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교섭을 진전시켰다. 그 결과 동래부 측은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계문을 올릴 수 있었고, 쓰시마 번 측은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교섭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위의 가와치가 실제로 수행했던 역할(A)과 수행할 수도 있었던 역할은 (B), 똑같이 교섭에 관여하면서도 관수로서는 애초에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었던 역할이었다. 이것이 조일교섭에서 재판이 갖고 있던 고유의 역할 내지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와치가 실제로 수행했던 역할(A)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재량으로 조선 측에 다소의 양보를 해주는 것도 가능했다. 이는 교섭 과정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교섭 전체를 진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가와치가 수행할 수도 있었던 역할(B)은 가와치가 재판이라는 직책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재판에게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도 그 직책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쓰시마 번에서는 이미 왜관에서 관수가 조일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조선 측을 대변할지도 모르는데도, 조일교섭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지도 않은 藩士들까지 재판으로 임명하여 조일교섭에 투입하고 있던 것이다²⁹⁾.

여기서 18세기 조일교섭에서 재판들이 수행하고 있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사 마사노리는 1678년 초량왜관으로의 移館을 경계로 쓰시마 번의 ‘戰後の餘威’에 의거하는 ‘힘에 의한 외교의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이 당시 쓰시마에서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며, ‘힘에 의한 외교의 길이 막히고 남은 것은, 논리를 세워 古事先例에 근거를 둔 주장을 쌓아가는 외교방식 이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³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조일관계에 이른바 ‘記錄의 時代’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이후 ‘記錄의 時代’가 열렸다고 해도 항상 논리나 근거로만 교섭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시대에도 왜관 측이 종종 사용해 온 시위 행동인 난출(闌出)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검토한 사례에서도 쓰시마 번 측은 25년째에 수리를 하겠다는 約條대로 서둘러 공사를 해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조선 측에서는 흉년으로 인해 공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쓰시마 번의 요구대로 즉시 공사를 해 주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항상 원칙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교섭이 논리나 근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난출을 감행한다면 조선 측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하여 막부를 대신하여 朝鮮通交를 담당하는 쓰시마 번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쓰시마 번으로서는 조선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양보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무난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시기 재판이 수행하고 있었다.

29) 앞의 주8에서 언급한 17세기 후반부터 정비 및 축적되기 시작한 기록을 통해 18세기 이후의 재판은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더해, 그 직책만으로도 조선 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같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쓰시마 번은 조일교섭에 관해 특별히 경험이 있지 않은 藩士들까지 재판으로 임명해서 교섭에 투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30) 오사 마사노리, 위의 논문, 505쪽.

[표 1] 西館東大廳東行廊 수리교섭 관련 연표.

일시		사건
1678년	3월	초량왜관 축조.
1733년	1월	西館東大廳東行廊 전소.
1740년	2월~8월	西館東大廳東行廊 개건.
1767년	7월~12월	西館東大廳東行廊 수리.
1791년	8월	館守 임무 교대(多田左膳→小川縫殿介). 신임 館守 오가와 누이노스케(小川縫殿介)가 수리 요구.
1792년	11월 12일	東萊府使 윤필병(尹弼秉)이 수리를 요청하는 계문을 올림.
1793년	1월 중순	11월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이 전달됨(흥년으로 수리를 보류).
	4월 18일	館守 임무 교대(小川縫殿介→戶田賴母). 신임 館守 도다 다노모(戶田賴母)가 수리 요구.
1794년	5월 19일	東萊府使 윤필병이 가을에 수리를 요청하는 계문을 올릴 것이라고 전달.
	8월 15일	公作米年限裁判 가와치 도쿠자에몬(河內德左衛門)이 왜관에 도착.
	9월 6일	東萊府使 윤필병이 수리를 요청하는 계문을 올림.
	10월 10일	裁判 가와치의 茶禮 거행.
	10월 15일	裁判 가와치가 公作米 교섭을 개시.
	11월 17일	裁判 가와치가 수리 교섭에 첫 개입.
	閏 11월 15일	9월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이 전달됨(흥년으로 수리를 보류).
	閏 11월 18일	館守 도다가 교섭을 중단.
	閏 11월 24일	裁判 가와치와 訓導 김덕순(金德淳) 및 別差 최창겸(崔昌謙) 사이에 합의안 도출.
	閏 11월 25일 혹은 26일	裁判 가와치가 館守 도다를 설득.
	閏 11월 27일	양측이 24일 합의안대로 이행하기로 최종 결정.
1795년	3월 21일	訓導 임무 교대(仲厚 김덕순→土正 박준한) 別差 임무 교대(汝完 최창겸→武卿 최국환)
	3월 29일	東萊府使 임무 교대(윤필병→윤장렬)
	4월 19일	新東萊府 윤장렬(尹長烈)이 수리를 요청하는 계문을 올림.
	5월 18일	9월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이 전달됨(내년 봄 착공).
	6월 26일	裁判 가와치가 귀국.
1796년	11월	西館東大廳東行廊 착공.

*이 표는 윤유숙 「18·19세기 왜관의 개건·수리실태」(『아세아연구』 46(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년)의 <표 2>와 『裁判記錄』, 『分類紀事大綱』, 『邊例集要』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17~18세기 조선 내 담배 전파와 일본산 담배의 유통

신경미(동국대학교)

1. 머리말
2. 조선 내 담배 전파 시기와 경로
3. 일본산 담배의 유행과 국산 담배의 발전
4. 맺음말

1. 머리말

현재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기호품을 즐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호품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이는 나라별, 시대별로 개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호품은 개인의 취향만이 아닌 당시의 사회와 문화·경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 확대되어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호품은 당시의 삶과 문화를 투영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기호품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담배를 주목한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유입된 경로는 일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16세기 후반 유럽에 전파된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일본을 거쳐 조선에까지 도달하여 일상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담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전파되었으며 재배되었을까. 전근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조선과 일본의 담배문화는 어떠할까.

담배가 지니는 역사·문화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의 전래와 확산¹⁾, 재배방법과 효능²⁾ 등에 관한 것이다. 담배연구는 문일평에서 출발한다. 문일평은 우리나라 담배의 역사와 어원, 예절 등을 당시의 시각에서 서술³⁾하였다. 한미 50년사와 조선의 문화·예술에 관하여 서술하는 흐름에서 작성된 것으로

1) 곽현숙·김영경, 「동아시아의 담배 명칭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5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8; 柳益相, 「우리나라 古農書에서 본 담배 名稱과 傳來」, 『한국작물학회지』 39권 2호, 한국작물학회, 1994; 朴容玉, 「남초에 관한 연구-조선왕조후반기에 있어서의 南草의 商·農業的 發展을 中心하여」, 『역사교육』 9, 역사교육연구회, 1966; 정기택, 「삼국에 전래된 담배의 이름과 설화에서 동질성으로 본 한국 담배의 기원 연구」, 『한국연초학회지』 37, 한국연초학회, 2015; 정인혁, 「담배 談論 一考」, 『항도부산』 39,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20; 최돈화, 「한국연초산업의 사적 고찰」, 『상학논집』 14, 청주대학교, 1972.

2) 박상영, 안상우, 「옛 문헌에 나타난 담배의 효능 및 담배 폐해의 대처」,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비교적 소략하지만, 우리나라 담배의 역사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담배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한 연구자는 안대희와 이영학이다. 안대희는 2015년 『담바고문화사』⁴⁾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담배가 유입된 순간부터 기호품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순간까지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이영학은 사회경제사적 시각에서 담배산업을 분석⁵⁾하였다. 한국 자본주의 발달의 흐름에서 연초를 선택하여 조선 후기 유입된 이래 일본의 경제적 침탈 속에서 담배산업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는 2020년에 도출되었다. 장순순은 일본의 공문서를 활용하여 일본의 담배와 담뱃대가 어떻게 전해지고 조선인의 생활문화로 투영되었는지 조일문화교류의 측면에서 “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⁶⁾ 그 결과, 조선후기 동래·부산지역이 최상품의 담배 생산지로 알려진 배경에는 왜관과 일본사행을 통해 유입된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주지하였듯이 담배문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담배가 지닌 가치는 역사·문화적 가치는 풍부하다. 이 연구는 앞으로 진행할 조선의 담배문화에 대한 역사적 접근의 출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 내 담배의 전파 경로와 시기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담배가 조선에 진출하여 어떻게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추적해보겠다. 이 연구가 조선의 담배문화, 더 나아가 전근대 동아시아의 담배연구에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 조선 내 담배 전파 시기와 경로

1624년 回答副使로 일본에 다녀온 姜弘重(1577~1642)의 『東槎錄』에는 일본의 담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은 대체로 날짐승에서 피꼬리와 까치가 살지 않고, 매도 드물었다. 그리고 길짐승에서는 범과 표범이 살지 않았다. 과일에서는 잣과 호두가 생산되지 않고, 채소에서는 수박이 없었다. 음식물 가운데에는 벌꿀이 나지 않았다. 호두·단목·담배[南草]·설탕·공작의 깃 등은 모두 흔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본의 소산이 아니고, 모두 남쪽 야만인들이 들여왔다. 그런데 남초만은 토산물이 되었다고 하였다.⁷⁾

3) 문일평, 『담배이야기』, 온이퍼브, 2015.

4) 안대희는 현재 학계에서 담배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담배에 대한 많은 자료를 소개하고 해설한 『담바고문화사』, 문학동네, 2015를 대표작이다. 이 외에도 18세기에 저술한 담배 전문 서적인 이옥(李錫, 1760~1815)의 『연경(煙經)』을 국역한 『연경. 담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과 「담배문화사의 시각으로 본 담배 假傳의 세계」, 『한국한문학연구』 55, 한국어와문학, 2014가 있다.

5)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신서원, 2013. 이 외에 이영학이 진행한 담배 관련 연구는 이영학, 「역비논단-담배의 사회사: 조선후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역사비평』 1991.2, 역사비평사, 1991; 「조선후기 담배의 급속한 보급과 사회적 영향」, 『역사문화연구』 2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5를 참고.

6) 장순순, 「한일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본 조선후기 倭館-일본산 담배 및 담뱃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0.

7) 강홍중, 『동차록』, 1625년 3월 5일.

지금도 기호품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담배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시작된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배를 발견한 후, 담배는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하였다. 유럽에 전파된 담배가 일본에 유입되어 동아시아에 퍼지기까지는 1세기가 걸리지 않았다. 남쪽에서 유입된 여러 물품 중 유일하게 일본의 토산물이 된 담배는 조선에까지 전파되었다.⁸⁾ 그렇다면 조선에 담배가 유입된 것은 언제였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柳夢寅(1559~1623)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상선이 부산 포구에 배를 대고 약 한 가지를 팔았다. 그 이름이 痰破塊인데 덩어리진 가래를 잘 낫게 한다고 했다. … 잎을 가루로 내어 술잔 속에 채우고 불을 붙여서 자루 주둥이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신다. …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복용하여 가래와 객란 및 가슴과 배의 질병을 치료하여 한두 번 효과를 보았고, 태우고 남은 재로는 옴이나 종기를 치료하였다. 그러자 3, 4년 사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리듯 앞다투어 구매하였다. 장안의 남녀가 어린애고 늙은이고 가리지 않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즐겨 태워서 연기를 마셔대니 코를 비트는 악취에 거리에 가득했다.⁹⁾

위 기록은 유몽인이 1612년 즈음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는 담배가 조선 사회에 유입된 경로를 알아보는 데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첫째, 판매한 지 3~4년에 사이에 전국으로 퍼졌다는 점, 둘째, 부산 포구에서 일본 출신 상인이 판매했다는 점이다. 유몽인의 기록대로라면 1608~1609년 사이에 담배가 유입되어 3~4년 만에 확산하였고, 그 시작은 부산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담배가 조선에 유입되는 시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다음의 [표 1]은 담배의 전래에 대해 기록한 사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담배 전파 시기

출처	전파 시기 ¹⁰⁾	내용
安鼎福, 『順菴集』 ¹¹⁾	1592~1598	남초는 임진왜란 이후 시작
柳夢寅, 『默好稿』 ¹²⁾	1608~1609	담파고는 일본 해상이 판매 3~4년 만에 전국에 유통
李晬光, 『芝峯類說』 ¹³⁾	1609~1614	담배는 근래에 왜국에서 들어옴
張維, 『谿谷漫筆』 ¹⁴⁾	1615	흡연방법은 20년 전에 일본에서 들어옴
趙慶男, 『續雜錄』 ¹⁵⁾	1617~1618	4~5년 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들어옴

8) 일본으로부터의 담배 전파에 대해서는 朴容玉, 「南草에 관한 研究-朝鮮王朝後半期에 있어서의 南草의 商·農業적 發展을 中心하여」, 『역사교육』 9, 역사교육연구회, 1966; 신규환·서홍관, 「조선후기 흡연인구의 확대 과정과 흡연문화의 형성」, 『의사학』 10권 1호, 대한의사학회, 2001; 안대회, 『담바고 문화사』, 문학동네, 2015;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연구』, 신서원, 2013을 참고.

9) 柳夢寅, 『默好稿』, 「痰破塊說」(안대회, 『담바고 문화사』, 문학동네, 2015, 32~33쪽 재인용.)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¹⁶⁾	1618	광해10년에 연초가 처음 들어옴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¹⁷⁾	1618	광해10년에 남령초가 성행함
『仁祖實錄』 ¹⁸⁾	1617~1618 1621~1622	丙辰·丁巳년간에 바다를 건너 들어옴 辛酉·壬戌사이에 크게 유행
李瀼, 『星湖僊說』 ¹⁹⁾	1620~1623	광해군말년부터 성행
李裕元, 『林下筆記』 ²⁰⁾	1622	광해14년 담바고가 왜국에서 들어옴

위의 표에 따르면 가장 빠른 시기는 安鼎福(1712~1791)이 기록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가장 늦은 시기는 목록 중 제일 후대의 사람인 李裕元(1814~1888)이 남긴 광해군 14년(1622)이다. 이 목록 중에 저자가 생존하여 당대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앞서 있었던 사실을 후대에 기록한 것보다 사실 여부에서 더욱 정확하리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후대에 저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몽인 이외에 李晬光·張維·趙慶男·李瀼의 기록에 주목하였다.

이수광(1563~1628)은 『지봉유설』에서 “담배는 근래에 왜국에서 들어왔다.”²¹⁾라고 하였다. 이수광이 『지봉유설』을 저술한 시기는 1614년이다. ‘근래’라고 하였으므로 당시를 기점으로 5년 전까지를 근래라고 가정한다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담배가 들어온 시기는 1609년에서 1614년 사이로 볼 수 있다.

장유(1587~1638)의 기록은 1635년에 쓴 것이다. 장유는 엄청난 애연가로 유명했는데, 흡연 방법에 관해 기술하면서 “우리나라는 20년 전에 시작하였다.”²²⁾라고 하였으므로 그 시기를

10) 명확한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각 사료의 저술연대를 고려하여 역산하여 추정하였다.

11) 『順菴集』 권13, 雜著, 「橡軒隨筆」 下.

12) 『默好稿』, 「痰破塊說」.

13) 『芝峯類說』 권19, 植物部, 「藥」.

14) 『谿谷漫筆』 권1, 漫筆, 「南靈草吸煙」.

15) 『續雜錄』 권2, 「壬戌年」.

16) 『五洲衍文長箋散稿』, 「賓主吃煙之儀辨證說」.

17) 『五洲衍文長箋散稿』, 「煙草辨證說」.

18) 『仁祖實錄』 권37, 仁祖 16年 8月 4日.

19) 『星湖僊說』 권4, 萬物門, 「南草」.

20) 『林下筆記』, 권13, 文獻指掌編, 「淡巴菰」.

21) “淡婆姑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 採葉暴乾 以火煎之 病人用竹筒吸其煙 旋即噴之 其煙從鼻孔出 最能祛痰濕下氣 且能醒酒 今人多種之 用其法甚效 然有毒不可輕試也 或傳南蠻國 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積年 服此草得瘳故名.”

22) “南靈草吸煙之法 本出日本 日本人謂之淡泊塊 言其草出自南洋諸國云 我國自二十年前始有之 今則上自公卿 下至輿臺蕘牧 無不服之 其草不見於本草諸書 未知性氣及主治 但味辛似有小毒 人未嘗茹服 但燒煙吸之 吸多則亦令人暈倒 久服者不必然 世之不服者 僅僅千百之一耳 頃見華人朱佐 浙江慈溪人也 言中國稱南草爲煙酒 或稱煙茶 百年前閩中已有之 今則幾遍天下 治赤鼻最有效 余問此物燥熱 必傷肺 何能治鼻 朱曰 能散滯氣故

161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경남(1570~1641)의 경우는 『속잡록』에서 “담배 종자가 4~5년 전에 일본에서 들어왔다.”²³⁾라고 하였다. 조경남이 『속잡록』을 저술한 1622년으로부터 역산하여 추정하면 담배 종자가 조선에 유입된 것은 1617~1618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1629~1690)은 “담배는 남쪽 바다에 있는 담파국에서 온 것이기에 담배[湛巴]라고 한다.”라고 하며 “남초의 성행은 광해 말년부터 시작되었다.”²⁴⁾라고 밝혔다.

위 자료를 통해 조선에 담배를 전한 것은 일본임을 확인하였다. 시기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 먼저 유몽인과 이수광이 언급한 시기는 1609년이 공통으로 추정된다. 이수광이 말한 ‘근래’를 앞당긴다면 1608~1609년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1609년, 조선과 일본은 己酉約條를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 따라 倭館에서의 무역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유몽인과 이수광의 언급은 타당하다.

장유와 조경남의 경우는 각각 1615년과 1617~1618년으로 앞선 두 사람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띈다. 유몽인과 이수광이 담파고 또는 담배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장유와 조경남의 경우 담배가 아닌 각각 ‘흡연방법’과 ‘담배 종자’라고 기술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장유의 경우는 담배가 유입된 후 어떻게 피우는지에 대해서 기술했는 것이며, 조경남은 담배 씨앗이 조선에 유입된 시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익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이, 담배[湛巴]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하여 담파국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익은 덧붙여서 담배가 성행한 시기는 광해 말년이라고 언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담배가 조선에 유입된 시기에 대해 추정²⁵⁾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608~1609년 사이에 일본에서 재배된 담뱃잎 또는 가공품 형태의 담배가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이것이 전국으로 퍼지는 데는 3~4년이 걸렸다. 담배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1615년경, 조선 사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특별한 방법이 유행한 듯하다. 또한, 조경남의 기록에 따라 담배 씨앗은 1617~1618년에 유입되어 광해군 말년인 1620~1623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유몽인의 기록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일본 海商에 의해 담뱃잎이 유통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무역을 통한 유통이라는 첫 번째 유통경로가 확인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건너온 담배는 무역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조선에 유입되었을까.

쓰시마의 領主 요시나리[義成] 父子가 각종 그릇·후추·짐승 가죽 또는 가죽제품·담배 등을 두 首譯 이하의 모든 역관, 그리고 讀祝官·醫員·寫字官·畫員 등에게 계급에 따라

耳 其言亦有理.”

23) “南靈草 盛用於世 一名談博怪 四五年前 厥種來自日本 南方人取以植之致富者多.”

24) “南草之盛行 自光海末年始也 世傳南海洋中有湛巴國 此草所從來 故俗稱湛巴云 有問於太湖先生曰 今之南草益乎 曰痰在喉咯不出則益 氣逆而涎潮則益 食不消而妨臥則益 上焦停飲而吐酸則益 隆冬禦寒 則益 曰益而無害乎 曰害尤甚內害.”

25)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담배의 전파 경로와 시기에 대해 추정하였다. 문일평이 『담배고』에서 1609~1614년이라고 주장한 이후(문일평, 『담배고』, 『湖岩全集』 권2, 일성당, 1939, 394~397쪽.) 이 설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담배와 담배 씨앗, 흡연방법 등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담배의 전래 시기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진행하며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아시아 삼국에서 사용한 담배 명칭은 시기마다 변화한다. 따라서 같은 시기 사용한 담배의 명칭까지 고려해서 살펴봐야 정확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

차이가 있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군관에서 졸병까지 각각 백반과 후추를 나누어주었다.²⁶⁾

위의 사료는 1655년(효종6) 통신사의 從事官으로 일본을 다녀온 南龍翼(1628~1692)의 기록이다. 남용익은 쓰시마의 영주로부터 여러 물품을 선물 받았는데 여기에 담배가 포함되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고 일본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처음 통신사를 파견한 이후 총 12번의 통신사를 파견하였는데, 통신사를 파견할 때에는 막부와 쓰시마의 고위관료에게 전달하기 위한 예물[公禮單]을 가져갔다. 통신사행단이 일본 측 인사에게 예물을 전달하면 상대측에서도 답례로 예물을 지급[私回禮單]했는데, 이 선물목록에 담배가 포함되었다.²⁷⁾

통신사행단이 받은 선물목록에 담배가 포함된 것은 1624년 강홍중의 기록에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다. 1624년 회답부사로 일본으로 간 강홍중은 쓰시마에 도착하여 순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쓰시마 영주의 家臣이었던 다치바나 토모마사(橘智正)에게 다양한 그릇과 후추·담배를 선물 받았는데 情만 받겠다는 뜻을 전하고 나머지 물품은 돌려보냈다.²⁸⁾ 이후 통신사행단은 보통 있는 일처럼 일본산 담배와 담뱃대 등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표 2]는 숙종8(1682년) 譯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洪禹載(1644~?)의 『東槎錄』에서 담배를 선물 받았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동사록』에 보이는 선물로 받은 담배 현황

일시	제공자	수여자	선물 목록
6월 28일	쓰시마 도주	홍우재	연죽, 삼중괘
7월 12일	쓰시마 도주	당상 상관	담배 3근 담배 30근
7월 25일	효고 태수	3사신	담배
8월 14일	지대 료우구우칸베에	홍우재	담배[蓑蓑]
9월 2일	마관 마지마 로쿠노신	홍우재	담배
	효우시로우 자에몬	홍우재	담배
9월 18일	이이호우키의 태수	각 사신	남초
9월 21일	오카자키 태수의 집사 도리야마우시노수께	각 사신	담배

26) 『扶桑錄』, 1656년 2월 3일.

27) 『增正交隣志』 권5, 「下程」에는 숙종8년의 통신사행이 받은 선물목록에 담배[南草]가 들어있으며, 1783년 영조39년 계미통신사행의 사예단에도 연초(煙草), 연관(煙管), 연죽(煙竹) 등이 포함되어있다.

28) 강홍중, 『동차록』, 1625년 3월 4일.

9월 24일	사와 태수의 집사 도즈카 사다유	홍우재	병화연죽
10월 16일	지쿠젠의 태수	사신, 역관	담배

일본인에게 담배를 선물로 받은 것은 통신사행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고, 부산의 왜관을 통해서도 담배 선물이 이루어졌다. 왜관에서는 왜관을 방문한 조선인을 접대할 때 일본요리를 내놓고, 술과 안주용 국물을 접대하며 그들이 돌아갈 때는 ‘전례대로’ 담배를 선물하였다.²⁹⁾ 이처럼 일본산 담배는 상인을 통한 무역이나 통신사행이 받아온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왜관에 서의 교류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입되고 전파되었다.

3. 일본산 담배의 유행과 국산 담배의 발전

17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담배는 담뱃잎 또는 가공된 형태로 전해져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도입 초기의 담배는 南草, 南靈草, 痰破塊, 煙草, 煙茶, 南洋草, 妖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데 담배를 가리키는 여러 이름 중 ‘지사미’ 혹은 ‘지삼’³⁰⁾라는 특이한 이름이 발견된다. 이 말은 17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에 널리 쓰이다가 점차 자취를 감춘 말이다.³¹⁾ 한자로는 ‘枝三’ 또는 ‘枝三伊’라고 쓴다.

대저 南番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남초라고 하는데 그중 잘게 썬 것을 枝三伊라고 부른다. 이것은 倭語다.³²⁾

徐浩修(1736~1799)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잘게 썬 담배를 ‘지삼이’라고 하였고 일본어였다. 이 말은 잘게 썬 담배라는 의미의 기자미타바고[刻みタバコ]에서 유래하였다. 1718년 일본에 다녀온 申維翰(1681~1752)이 일본의 담배에 대하여 “조선의 남초는 본래 동래의 왜관에서 얻어 온 것으로 시작되었다. 속된 말로 남초를 淡麻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일본말의 多葉粉이란音が 잘못 전해진 것이었다. … 일본 사람들은 담뱃잎을 찌서 말리고 독을 제거하고 실처럼 가늘게 썰었다.”³³⁾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지삼은 일본만의 독특한 가공법을 통해 만든 후 잘게 썬 담배임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의 담배 가공법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발달했기 때문에 17세기의 지삼은 대부분 일본에서 잘게 썰어 유입된 일본산 담배를 가리키고 있다. 조선 담배에 비해 가공 기술에서 앞선 일본산 담배는 담배가 전파된 첫 1세기 동안 동아시아 흡연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³⁴⁾

29) 왜관에서의 담배 선물에 대해서는 장순순, 「朝日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본 조선후기 倭館」, 『항도부산』 제 39호, 부산광역시역사편찬위원회, 2020에 상세하다.

30) 이 글에서는 지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31) 안대회, 『담바고문화사』, 문학동네, 2015, 53쪽.

32) 『海東農書』 권4, “大抵出於南番 故俗稱南草 其切細者曰枝三伊 此即倭語也”

33) 『海遊錄』 下, 「聞見雜錄」

34) 장순순, 앞의 논문, 2020, 55쪽.

잠깐 있노라니 어떤 호군 기병이 바라보며 손을 휘둘러 즉시 그는 하직하고 갔습니다. 신은 점심(中火)을 먹고 길을 떠나 전진하면서 진중에서 두루 호장을 만나 보았는데, 호장이 마주 나와 서로 절하고 동서로 차례로 앉아 안부를 물은 뒤에 신이 지삼과 남초 각각 한 봉씩과 연죽 하나씩을 나누어 주니 기뻐하며 받고 사례하였습니다. 호장은 시중군 호인을 시켜 유과 몇 그릇을 내오고 소주를 마시게 하므로 신이 사양하고 마시지 아니하니 강권하여 마지아니하였습니다. 신은 마지못하여 몇 잔을 마시고 그만 두었습니다.³⁵⁾

위의 기록은 조경남이 쓴 『속잡록』에 있는 내용이다. 1633년 조경남이 후금의 장군에게 지삼과 남초, 그리고 연죽을 선물로 주자 후금의 장군이 기뻐하며 유과와 술로 보답하였다.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짐작할 때 조경남이 언급한 지삼은 일본산 담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경남은 일본산 담배를 후금의 장군에게 선물로 줌으로써 사교의 매개체로 활용하였다.

두 차례에 호란 이후 조선과 청의 관계에서 지삼은 많은 역할을 하였다. 1637년 비변사에게 청하기를 “贖還使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삼초 100근과 담뱃대 100개를 別人情으로 지급”³⁶⁾하자고 할 만큼 지삼은 청나라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물품이었다.³⁷⁾

청나라 사람들의 담배에 대한 강한 기호는 의도하지 않은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昭顯世子(1612~1645)가 머물렀던 瀋陽館에서는 청나라 사람을 접대하거나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담배를 선물³⁸⁾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고, 포로로 잡혀있던 조선인을 속환할 때에도 담배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속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속환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담배를 싣고 잇달아 들어와서 지금 관소에 머무르고 있는 수가 이미 많아 말썽이 생기게 하고 그 책임이 강원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속량하는 가격은 날로 뛰고 전에 연속해서 속환하고 매매하던 길 또한 장차 막히게 생겼으니, 이로써 말씀드리건대 해롭기만 하고 이득은 없으며 관소에 폐만 끼칠 뿐 아니라 아문통사도 모두 말하기를, “애초에 담배 들여오는 일을 허락한 것은 대략 관소에 있는 사람과 인질 등이 피울 수 있도록 일용의 밑천으로 삼고자 했을 뿐인데, 지금에 와서는 바리바리 실어 들어오니 그 번잡함이 너무도 심하다 합니다.” 합니다. 전에

35) 조경남, 『속잡록』 3, 1633년 5월 11일.

36)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윤4월 27일, “속환사가 저쪽에 도착하면 반드시 人情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일에 따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들으니 該曹가 지급한 의례적인 노자는 지극히 약소하여 가지고 가는 양은 적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일이 성사될 가망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해조의 재력이 근래에 상당히 쌓였고 일본에서 보낸 은자 또한 수천 냥이라고 하니 300냥을 덜어내고, 지삼초 100근과 담뱃대 100개를 別人情으로 청하여 특별히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37) 이러한 사실은 만주어로 쓰인 청나라 고문서 『舊萬州檔』에 Jisami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백인의 연구에 따르면 Jisami는 『구만주당』의 천총 5년~천총 10년 사이, 한이 귀족에게 상 또는 선물로 내려주는 기사에서 Dambagu와 함께 등장하고 있으며 1630년대를 제외한 다른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에서 연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Jisami는 『滿文老檔』에서 Kijimi로 바뀌어 이해되었고, 海蔘 또는 海鼠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구만주당』에 기록된 Jisami는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던 지사미의 차용어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일본산 담배인 지사미를 가리키는 것이다(성백인, 『舊萬州檔』의 Jisami와 『滿文老檔』의 Kijimi, 『알타이학보』 제6호, 한국알타이학회, 1996).

38)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7월 15일, “세자가 이역에 蒙塵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신민의 아픔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따위 물건은 兩西에서 들여보내기는 하나 東界에서 나는 물건도 전부 빠져서는 안 되니, 적당히 들여보내소서. 또 관소에 왕래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데 일행에게 줄 만한 물건이 없다 하니, 남초 3백여 근을 보내소서.”

드린 보고 중에, 속환하려는 사람들을 두 달에 한 번 들여보내라고 한 뜻은 대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나, 거듭 생각하니 오히려 타당하지 못한 듯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³⁹⁾

조선 조정에서 심양으로의 담배 유입을 허락한 것은 심양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 동안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의 담배 수요가 늘어나니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담배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서 비롯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청나라 조정에서 조선인을 속환할 때 담배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조치⁴⁰⁾를 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도 담배에 대한 청나라 사람들의 욕구는 줄어들지 않았기에 조선에서는 청나라로 갈 때 담배를 가져가서 문제해결에 있어 담배를 사용하는 일은 18세기까지 없어지지 않았다.

담배에 대한 높은 수요는 조선 조정에도 큰 부담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청나라로 가는 사행에는 많은 예물이 포함되었다. 예물에는 포·명주·은자·종이·부채부터 표피·녹피·청서피·수달피 등의 가죽류와 은장도·왜검·지삼·남초·은연죽 등⁴¹⁾이었고, 이러한 물품을 준비하는 것은 조선 조정에 큰 부담이었다.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조선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⁴²⁾ 이렇게 담배의 엄청난 인기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산 지삼은 최고급 담배로 조선과 청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다. 일본과 무역 통로가 없는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중개무역을 통해 지삼을 공급받았다. 『迎接都監應辦色儀軌』에는 칙사에게 하사하는 공식적인 물품 내역에 장죽과 함께 지삼초와 궤지삼초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⁴³⁾ 조선은 청나라의 관료나 중요인사에게 공적으로, 때로는 사적으로 꾸준히 일본산 지삼 선물을 하였다. 이는 청나라 사람의 요청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그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 측에서 먼저 주기도 한 것이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일본산 지삼은 널리 활용되었다. 조선의 사신은 청의 섭정왕과 여러 왕에게 바치기 위해 동래에서 지삼을 사들여 1,000갑씩 가져왔다.⁴⁴⁾ 대외관계에서 일본산 지삼이 활용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몽골 지방에서 소를 사는 일에 사용한 일화이다.

인조 14년인 1636년 평안도에서 牛疫이 발생⁴⁵⁾한다. 우역은 같은 해 9월에는 한성에서도

39) 『심양장계』, 인조20년 6월 26일.

40) 『심양장계』, 인조16년 5월 27일에는 청측에서 심양관에 전달하기를 “담배로 속환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행동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41) 『礪溪隱錄』 권3, 田制後錄, 經費, “今則自戶曹資給極多 今自該曹給一行布紬銀兩紙扇 以至豹皮鹿皮青黍皮水獺皮銀粧刀錫粧刀倭劍枝三草銀烟竹之類 其數極多 蓋自亂後如此 而虜人誅求百端 王子權貴之奉使者 皆將賂行貨 漸漸增添而然云 而猶求請不已 蓋求請既有成例 故無人止之也.”

42)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1월 30일, “또 아뢰기를, “발매한 뒤로 2, 3일 동안 저들이 고른 것은 수달피 744장, 청서피 762장, 녹비 44장, 궤지삼 1000갑, 백면지 600권인데, 줄곧 물품을 바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물력이 고갈되어 구하여 들일 수가 없습니다. … 백면지는 본래 시전에 비축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조에서 구하여 지급하게 해서 책임을 모면할 방도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피물도 넉넉한 수량을 바치라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독촉하고 있는데, 온갖 방법으로 설득하여도 들어줄 리가 없으니, 매우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감히 아뢰니.”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더욱 마음을 다해 설득하여 시민들의 폐단을 조금이나마 없애 주라.” 하였다.”

43) 안대회, 앞의 책, 2015, 55쪽.

44)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3월 8일.

45)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8월 15일.

발생할 만큼 널리 확산하였다. 한성에서 소의 가격이 하락하고, 우역을 피하려고 산 소를 도살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내렸다.⁴⁶⁾ 그런데도 우역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 달 뒤에는 서쪽 지방까지 퍼져 “열 마을에 한 마리의 소도 없다.”⁴⁷⁾라고 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비책으로 가장 먼저 논의되던 것은 제주의 소를 사들이는 것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후의 몽골 지역의 소를 구매⁴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 아뢰기를, “소를 사기 위한 後運에 쓸 지삼초를 경상감사가 비축해 놓은 布木을 덜어내어서 동래부에서 사들이게 한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래부사의 청정 안에 ‘보낸 30동에서 28동을 덜어내어 지삼초 1200근을 사고 2동은 소연죽 2300개를 사서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삼초를 看品해 보니 왜의 지삼초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장사꾼이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습기가 많이 스며든 것으로 봐서 이는 필시 倭譯이 성의 없이 혹 자신들의 돈으로 쓸모없는 물건을 사서 구차하게 숫자만 채워 보냈을 것이니 지극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왜역을 攸司로 하여금 우선 추고하게 하고 지삼초를 다시 마련해서 바치도록 하소서. 동래 부사도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⁴⁹⁾

위의 글은 인조 16년의 기록으로 이를 통해 몽골의 소를 사 오는데 일본산 지삼이 활용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조정에서는 소의 거래에서 사용하기 위해 동래부에서 지삼을 사들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던 일본어 역관이 일본산 지삼이 아닌 국내에서 만든 지삼을 보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동래지역은 17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일본산 담배 유통의 중심지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어 역관이 일본산 지삼을 구매할 자금으로 국내에서 만든 지삼을 구매하여 일본산 지삼으로 가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17세기 일본산 담배의 유통 상황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 번째는 당시 일본산 담배는 조선의 담배보다 값비쌌다는 사실이다. 몽골에서 농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일본산 지삼의 가격은 1근에 면포 1.18필⁵⁰⁾에 해당하였다. 17세기 이후 포목 한 필은 쌀 4말 정도였으니, 일본산 지삼의 가격이면 쌀 4말 이상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일본산 지삼은 고가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내린 거액의 돈이 일본어 역관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이에 일본어 역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본인의 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선의 담배를 구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산 지삼과 국내산 지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사실이다. 조정의 관계자가 동래부에서 올라온 지삼을 본 순간 바로 국내산 지삼임을 눈치챈 것 같지는 않다. 물건의 품질 정도를 자세히 살펴보는 看品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국내산 지삼임을 알아챘다는 것은, 이 시기에 이르면 일본산 지삼과 국내산 지삼이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들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조선의 담배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46)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9월 21일.

47)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0월 12일.

48) 『인조실록』 26권, 인조 16년 1월 4일; 『심양장계』, 인조16년 4월 29일의 기록에도 역관 조효신과 김경신이 소 37마리를 사서 돌아왔다고 하였다.

49)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2월 28일.

50)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2월 10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몽골의 소를 사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조16년 정월 초5일 비변사에서 이번에 소를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지삼은 심양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저지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앞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장계⁵¹⁾를 올린다. 이처럼 당시는 대외교역에 있어 대외적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시기 심양에서 보내온 장계에는 청에서 담배금지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긴 자를 엄히 다스리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⁵²⁾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런데도 조선에서는 몽골의 농우 구매를 추진하였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대응품으로 일본산 지삼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일본산 담배가 조선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도 그리고 조선의 대외교역에서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조선에 담배가 유입된 이후 국내산 담배와 일본산 담배는 청나라에서의 담배에 대한 높은 수요에 맞물려 주요 교역품으로 떠올랐다. 18세기 즈음, 청나라에서는 흡연이 더욱 보편화하였다. 흡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담배가 재배되면서 조선으로부터 유입되는 담배는 점차 그 위치가 낮아졌고, 일본산 담배를 포함하여 담배 자체가 대청무역에 있어 조연으로 물러나게 된다. 담배보다는 연죽이 해삼, 미역, 종이와 함께 잡물로써 선물의 대상이 되었으며, 담배는 의주 사람이 고마꾼으로 따라 들어가 생계를 꾸리기 위한 물품 정도로 인식되었다.⁵³⁾

조선에서 일본산 담배의 인기도 점차 사그라졌다. 일본산 담배를 몽골이나 청에 중개하는 현상은 18세기에 접어들어 국내산 담배 재배가 활발해지고 품질이 점차 좋아지면서 차츰 줄어들었다.⁵⁴⁾

源璫가 또 말하기를, “우리 일본 담배의 품질이 귀국의 것에 비해 어떠합니까?” 하므로, 옆에 있던 통신사 종사관 南崗이 대답하기를, “조선의 토산품에는 못 따를 것 같습니다.” 하니, 玠요가 말하기를,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맛은 모르겠지만 빛깔이 좋지 않은데야 어쩔 것입니까?” 하였다. 부사 靑坪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 빛깔을 취한다면, 그것은 눈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지요.” 하니, 玠요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맛이 빛깔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였다.⁵⁵⁾

위의 내용은 1711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任守幹(1665~1721)이 당시 정사였던 조태역과 일본인 玠요와의 필담을 기록한 것이다. 일본의 담배를 조선의 담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질문에 조태역은 “조선의 토산품에는 따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다. 이 상황은 단순히 조선인이 가진 조선 상품에 대한 자부심 또는 일본에 대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말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시기는 국내산 담배의 품질 향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 조태역의 말은 이와 같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담배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담배는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⁵⁶⁾ 그런데도 담배는 빠르

51) 『비변사등록』, 인조 16년 1월 5일.

52) 『심양장계』 인조 16년 4월 29일; 5월 27일; 6월 8일; 6월 21일.

53) 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44쪽.

54)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신서원, 2013, 35쪽.

55) 『東槎日記』, 1711년 11월 5일.

56) 상술하였듯이 인조 대에는 담배 1근에 은 1냥에 거래되었다. 담배의 가격이 고가였던 사실은 경상도 민요인 <담바구 타령>의 “은을 주러 왔느냐. 금이나 주려고 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담바귀 씨를 갖이고

게 확산하였고 흡연인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보편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의주에서는 담배가 고리대 자금으로 활용⁵⁷⁾되었으며, 관직을 얻기 위한 뇌물⁵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으로 보면 담배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담배는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이었다. 담배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담배 재배를 시작하는 농가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옛 노인 말씀을 들어봤더니/ 예로부터 서로 전해 내려오는 말
신기한 씨앗이 남쪽에서 와 / 마침내 팔도에 퍼졌다 하네

...

농부는 울타리 양 옆에 심고 / 隱者는 초가집 앞뜰에 심고
저 멀리 오이밭 보리밭까지 / 맑은 임천 곁에까지 없는 곳 없네⁵⁹⁾

상술한 시는 尹愔(1741~1826)가 지은 「연초가」이다. 이 시를 보면 담배 재배지의 확산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어디에서든 담배밭을 볼 수 있었다. 농부의 가까운 울타리부터 먼 곳의 오이·보리밭에까지 담배를 키우고 있었다. 농민들은 자신이 피우기 위해 자기 집의 울타리 옆이나 집 앞뜰에 심었다. 그러다 담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담배의 가치도 점점 상승하자 밭에다가 담배를 심기 시작하여 오이밭과 보리밭까지 담배밭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세간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지니, 담배를 심는 사람도 많아진다.⁶⁰⁾”라는 말이 돌기도 하였다. 즉 담배가 전래된 지 100년이 지나자 비옥한 밭에도 담배를 재배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한 지역 전체가 담배를 재배하게 되었을 정도로 담배 재배 지역이 확대되었고,⁶¹⁾이런 가운데 담배로 유명한 산지가 생겨난 것이다.

18세기 조선에서는 전라도 진안에서 재배되는 담배가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다음은 평안도 삼등의 담배였다.⁶²⁾ 19세기에는 경기도 광주 세촌면 금광리에 살고 있던 김씨의 밭에서 나온 담배가 유명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금광초⁶³⁾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평안도 성춘초, 전라도 상관면에서 생산되는 상관초도 좋은 품질의 담배로 인기가 높았다.⁶⁴⁾

담배로 유명한 산지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었다.

쓰시마 섬 태수가 사람들을 보내 문안하고, 어제 우리가 보내 준 예물에 감사하였다.

왔네.”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7) 『비변사등록』, 인조22년 5월 15일.

58)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12월 4일.

59) 『無名子集』, 詩稿, 제1책, 詩, 「在泮有人以煙草歌命題賦百韵 押煙 以速爲善 余亦走筆」.

60) 『비변사등록』, 영조 18년 1월 8일.

61) 이영학, 「조선후기 담배의 급속한 보급과 사회적 영향」, 『역사문화연구』 제2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5, 67쪽.

62) 『無名子集』, 詩稿, 제1책, 詩, 「在泮有人以煙草歌命題賦百韵 押煙 以速爲善 余亦走筆」.

63) 『林下筆記』 권32, 旬一編, 「金光草」.

64) 『林下筆記』 권32, 旬一編, 「金光草」.

또 사람들을 보내 담뱃대 4개와 담배 3종류를 보내왔다. 담배는 옷칠한 3층 상자에 담았는데, 한 층에는 ‘핫토리[服部]’라 쓰고, 한 층에는 ‘요시노[芳野]’라 쓰고, 한 층에는 ‘신덴[新田]’이라고 썼다. 이것들은 담배가 생산된 지명인데, 이 세 가지 담배는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였다. 바로 그것을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다.⁶⁵⁾

조명채가 쓰시마 태수에게 받은 선물에는 3가지 종류의 담배가 포함되어있었다. ‘핫토리’·‘요시노’·‘신덴’이라고 쓰인 상자에 담겨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산지의 이름을 본 딴 것이었다. 국내에서 진안과 삼등, 평안도의 담배가 최상의 품질로 인기를 끌었다면, 일본에서는 핫토리, 요시노, 신덴 지역에서 생산한 담배의 명성이 높았다.

흡연인구의 증가는 사회적·경제적 목적에서 담배 재배지의 증가를 불러왔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 속에서 각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담배 품질의 향상에 집중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담배 생산지에 따라 담배가 브랜드화되는 현상은 흡연인구의 증가에 따른 담배 재배지의 확대-담배 재배지 확대에 따른 담배 품질의 발전이라는 불가분적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8세기에 이루어진 통신사행단의 기록을 보면 일본산 담배를 대신하여 눈을 끄는 것이 있다. 연죽, 연관 등 흡연을 위한 도구가 그것인데, 다음의 [표 3]은 18세기 통신사행단의 기록에서 담배와 흡연 도구 선물을 받은 내용의 대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18세기 사행록에서 보이는 담배와 흡연 도구

출처	날짜	내용
임수간, 『동사일기』	1711년 9월 4일	연초
	1711년 7월 20일	연초, 은담뱃대
	1711년 9월 11일	연초
	1711년 10월 1일	연초와 담뱃대주머니[竹囊]
신유한, 『해유록』	1718년 8월 18일	남초
	1718년 9월 11일	영초(靈草)
	1718년 6월 30일	담배 도구[靈草具]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1748년 2월 24일	연초, 담뱃대, 작은 화로, 타구
	1748년 3월 5일	연초, 담뱃대
	1748년 3월 9일	은화로, 은담뱃대
	1748년 3월 12일	연초
	1748년 3월 27일	연초

65) 『奉使日本時間見錄』, 1748년 3월 9일.

	1748년 4월 5일	연초
	1748년 4월 17일	연초
	1748년 5월 16일	담배도구[烟茶之具]
	1748년 6월 15일	연초[莢蓆]
	1748년 7월 10일	연초
趙曦, 『海槎日記』	1764년 2월 25일	담배함[煙草櫃],
	1764년 4월 16일	담뱃갑[煙匣], 연초
	各處私禮回禮	담초, 연초, 담뱃대[煙管, 煙竹]

위의 표에는 여러 특징이 드러난다. 먼저, 17세기 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지삼은 이제는 눈에 띄지 않는다. 담배를 지칭할 때는 연초 또는 담초·영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와 관련된 담뱃갑, 담뱃대, 화로 등과 같은 담배 도구가 여럿 보인다. 당시, 조명채는 은으로 만든 담뱃대와 화로를 보고는 정교함과 화려함에 놀라기도 하였다.⁶⁶⁾ 조선에서도 담배함, 담배주머니, 담뱃대, 화로 등 담배와 관련된 도구가 발달하였는데, 동래에서 만든 담뱃대는 최상의 품질로 인기가 높았다.⁶⁷⁾

이처럼 18세기에 이르면 조선과 일본의 담배문화는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흡연인구에 증가에 따라 담배 재배지가 늘어나면서 담배는 지역별로 브랜드화되었고, 품질이 향상되었다. 17세기 독특한 가공법으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산 담배 지삼은 점점 소멸하고, 대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담배가 인기를 끌었으며, 담배와 관련된 도구가 점점 발달하는 담배문화가 형성되었다.

4. 맺음말

17세기 조선에 일본으로부터 담배가 유입되었다. 전파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여러 사료를 참고하여 추정할 때, 담뱃잎 또는 가공된 형태의 담배가 조선에 처음 전해진 것은 1608~1609년 사이인 것으로 짐작한다. 가공품 형태의 일본산 담배는 처음 유입된 지 3~4년 만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어 1617~1618년 사이에 담배 씨앗이 전파되면서 1620~1623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담배 전파의 중심에는 통신사행과 왜관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일 관계가 재개되면서 조선은 일본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통신사행단은 많은 예물을 받았는데 이 목록에 담배가 포함되었다. 동래부에 설치된 왜관에서도 담배의 유통이 포착된다. 왜관에서는 왜관을 출입하는 사람을 접대할 때 술과 일본요리를 차리고, 전례대로 담배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조선에 유입된 담배는 받

66) 『奉使日本時間見錄』, 1748년 3월 11일.

67) 장순순, 앞의 논문, 2020, 70~72쪽.

은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면서, 또는 시장을 통해 전국에 유통되었다.

한편, 가공품의 형태로 조선에 유입된 일본산 담배는 17세기 조선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독특한 가공법을 이용하여 만든 지사미는 용어 그대로 조선에 전해져 지삼 또는 지삼이라고 불렸고, 청나라에는 Jisami로 전해졌다. 지삼은 당시 고가의 물품이었고, 청나라에서도 지삼에 대한 인기는 상당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일본산 지삼을 대청무역과의 공적 관계뿐만 아니라 청나라 사람과의 사적 관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무역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청나라의 감시를 뚫고 몽골의 소를 사기 위한 대응품으로 최고급 일본산 지삼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청나라 사람의 담배에 대한 극심한 수요는 담배가 지닌 고부가가치와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폐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과 청나라에서 일본산 지삼의 인기는 18세기 담배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담배 재배지의 확산, 품질 개선 등으로 인해 조금씩 떨어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자취를 감춘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담배 재배법이 발달하여 품질 좋은 담배를 제작하였다. 진안, 평안, 삼등은 담배 맛이 좋은 산지로 유명하였다. 흥미롭게도 18세기 조선의 담배문화는 일본과도 유사하다. 당시 일본에서도 품질 좋은 담배를 만드는 산지가 형성되었고, 담뱃대, 담배주머니와 같은 담배 도구가 제작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에 전해진 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기호품인 담배문화 연구의 출발점이다. 좀 더 명확한 전파 시기와 유사하게 형성된 18세기 조·일의 담배문화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瀋陽狀啓』

『谿谷漫筆』

『芝峯類說』

『續雜錄』

『星湖僊說』

『順菴集』

『林下筆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海行摠載』

『海東農書』

『海遊錄』

2. 저서와 논문

朴容玉, 「남초에 관한 연구-조선왕조 후반기에 있어서의 南草의 商·農業的 發展을 中心하여」,
『역사교육』 9, 역사교육연구회, 1966.

문일평, 『담배고』, 『湖岩全集』 권2, 일성당, 1939

문일평, 『담배이야기』, 온이퍼브, 2015.

성백인, 「『舊萬州檔』의 Jisami와 『滿文老檔』의 Kijimi」, 『알타이학보』 제6호, 한국알타이학회, 1996.
안대회, 『담배고문화사』, 문학동네, 2015.

_____, 「담배문화사의 시각으로 본 담배 假傳의 세계」, 『한국한문학연구』 55, 한국어와문학,
2014.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신서원, 2013.

_____, 「역비논단-담배의 사회사: 조선후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역사비평』 1991.2, 역사비평
사, 1991.

_____, 「조선후기 담배의 급속한 보급과 사회적 영향」, 『역사문화연구』 22, 한국외국어대학
교 역사문화연구소, 2005.

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장순순, 「朝日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본 조선후기 倭館」, 『항도부산』 제39호, 부산광역시역사편찬위
원회, 2020.

정인혁, 「담배 談論 一考」, 『항도부산』 39,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20.

일제의 식민지 조선 내 아동학대방지법 제정논의와 민족차별

이주희(동국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서론2. 일제의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 내용3. 식민지 조선 내 아동학대방지법 요구4. 조선총독부의 아동학대방지법 논의와 차별적 조치5. 결론 |
|---|

1. 서론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으로 한국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21년에 개정하였다. 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지법」(1981년부터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안에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조항만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 금지조항들은 1933년 일제가 제정한 「아동학대방지법」(내무성령 제21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당시 일제는 1931년 만주를 침략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일본 본토 내에서 아동보호를 법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처음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37년 아동과 모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母子保護法」이 제정되어 일제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법적인 ‘보호’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당시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아동학대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소년운동이 일어나 사회적 인식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법을 제정할 때 식민지 조선은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이에 조선인들은 조선총독부에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35년 조선총독부는 이를 수용하여 피아동학대조사를 진행하여 법안을 제정할 것처럼 보였지만 1944년에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구호령」을 공포하면서 「아동학대방지법」과 「母子保護法」의 내용을 「조선구호령」에 포함시켰다고 선전했지만 이는 일본 본토와 차별적인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즉, 일제의 「아동학대방지법」과 식민지 조선 내 적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30년대 이후 일제 식민정책의 내용과 성격에서 차별점과 기만성이 있음을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아동학대방지법」의 역사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는 없지만 이와 관련한 조선구호령의 연구는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그나마 축적되어 있으며, 주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계열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일본 연구들은 아동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아동노동과 아동살해 문제에 있었음을 밝히면

서 그 제정과정과 사회여론 등을 분석하였다.¹⁾ 그리고 최근에 다카하시 야스유키(高橋靖幸)는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 중 아동노동이 학대문제로 보는 단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그는 정부의 논의와 매스미디어의 보도를 중심으로 아동노동과 아동살해 두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형성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²⁾

이처럼 일제강점기 아동학대방지법 관련 연구는 국내보다 일본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들은 일본 본토 내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정에만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있을 뿐 식민지 조선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식민지 조선에 차별적으로 대해졌는지 보고, 나아가 그 과정이 기만적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일제의 아동학대방지법 제정배경과 시행되는 내용을 개괄한다. 3장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식민지 조선에 보도됨에 따라 조선인들의 요구를 다루고자 한다. 4장에서는 조선인들의 요구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아동학대방지법을 논의 및 제정 과정에서 보이는 기만적인 태도와 차별적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2. 일제의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 내용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였고, 이에 어린 아동들이 공장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각 국은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의 시간과 연령을 제한하였다.³⁾ 또한 민간에서도 아동을 보호하자는 아동학대방지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아동 보호에 앞장섰던 미국과 영국의 운동은 프랑스, 독일 등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⁴⁾

특히 세계 각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급증한 아동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앞장선 미국은 1919년 5월 5일 워싱턴에서 아동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세르비아, 일본 등 각 국의 대표자를 초청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1) 아동의 노동과 교육, (2) 어머니와 아동의 건강에 대한 공공의 보호, (3)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아동 등을 논의하였다.⁵⁾ 당시 일제는 사회사업의 아버지라 불

1) 高玉和子, 「児童虐待防止法の成立過程について」, 『保育論叢』 20, 文教大学女子短期大学部児童科, 1985 ; 安岡憲彦, 「戦時局下の貧困児童への保護施策-児童虐待防止法の制定をめぐって-」, 『近代東京の下層社会-社会事業の展開-』, 明石書房, 1999 ; 杉田菜穂, 「日本における児童権論の展開と社会政策-1933年児童虐待防止法を見据えて-」, 『経済学雑誌』 108(4), 2008 ; 田中亜紀子, 「昭和戦前期の未成年者処遇制度: 昭和八年児童虐待防止法案審議を主たる対象として」, 『阪大法学』 63(3・4), 2013.

2) 高橋靖幸, 「昭和戦前期の児童虐待問題と「子ども期の享受」」, 『教育社会学研究』 102, 2018.

3) 영국은 1802년 도제법(아동노동자보호법)과 1833년 일반 공장법을 제정하였다. 9~13세의 아동은 9시간, 14~18세의 아동은 12시간까지 노동할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야간작업을 금지하였다. 1844년 이 법에 여성 노동자의 보호규정을 추가하고, 1847년 여성과 연소자의 10시간 노동을 규정하였다.

4) 영국은 1889년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1904년에 개정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04년에 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아동보호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1887년에 아동구호연맹(L'Union Française pour le sauvetage de l'enfance)을 설치하고, 폴 노리송(Paul Nourrisson)과 에르네스트 뉴스(Ernest Nusse)가 아동학대방지에 대해 입법화운동을 전개하면서 1918년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로 영국의 아동학대방지를 조사하여 아동학대방범을 채택하기도 했다.(吉田熊次君, 「英國に於ける児童虐待防止會」, 『婦人と子ども』, 1909, 7~14쪽 ; 三田谷啓, 『児童と教育』, 1917 35~58쪽 ; 生江孝之, 『児童と社會』, 兒童保護研究會, 1923, 272~273쪽 ; 『被虐待児童保護概況』, 東京府學務部社會課, 1939, 6쪽).

렸던 나마에 다카유키(生江孝之)를 파견하였는데,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⁶⁾

나마에 귀국 후 위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1920년 내무성 사회국이 신설되면서 아동 보호 업무가 추가되는데 영향을 주었다.⁷⁾ 1922년 6월 내무성 사회국은 사회사업의 연혁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本邦社會事業概要』(1922)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아동보호부분 중 ‘피학 대아동보호’항에서 “의붓자식, 양자(貰子)의 학대, 그 밖의 방기아동(放棄兒童), 사자춤(獅子舞), 곡예(輕業), 기타 고용된 아동(傭ひ兒童)의 혹사(虐使) 등을 예방하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⁸⁾ 이처럼 일제는 당시 세계 흐름 속에서 아동보호 안에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즉, 세계 각국이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⁹⁾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각국이 인적자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으로 나타냈음을 밝혔다. 특히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역임했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¹⁰⁾는 『매일신보』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논설을 작성하였다. 마루야마가 주장한 아동보호는 전쟁과 관련이 있었다. 마루야마는 1870년 7월 19일에 발발한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패한 이유가 독일 인구보다 적었기 때문에 독일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즉, 마루야마는 아동을 보호하여 인구 수를 늘리고, 인구 수가 많아야 향후 일어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¹¹⁾ 또한 일제는 인적자원이 바로 나오지 않고, 미래에 사용되어진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질적·양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설정되었다.¹²⁾

1920년대 일제는 아동보호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공장법(1911년 공포, 1916년 시행) 안에 노동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정하고, 야간 업무를 금지하는 등 주로 공장에서의 아동보호만을 유지하였다. 특히, 이 시기 일본 본토 내 아동애호운동은 도쿄와 오사카에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문제, 아동양육 등에 대한 인식이 정착하게 된 계기였다. 1920년대 중반 일본 본토 내 일부 관료들은 아동학대문제를 특정업종에만 규정하지 말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일제는 사회사업조사회와 논의하기도 했다.¹³⁾

1930년 일본 본토 내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¹⁴⁾ 1930년 일본

5) 『社會局事務概要』, 1931, 1쪽.

6) 『社會事業講演』, 『매일신보』 1921년 9월 7일 2면.

7) 『勅令 第460號 社會局官制』, 『官報』, 1922년 11월 1일 1~2면 ; 『社會局事務概要』, 社會局庶務課, 1931, 1쪽 ; 1918년 설치된 구제사업조사회는 1919년 10월 내무대신으로부터 「아동보호에 관한 건」에 대해 자문을 받아 같은 해 12월, 「아동보호에 관한 시설요강」을 보냈다. 구제사업조사회는 “아동보호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별도로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조항’이 명시되었다. 즉, 아동학대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법제화를 강하게 요청된 것이었다(高橋靖幸, 『昭和戦前期の児童虐待問題と「子ども期の享受」』, 2018, 179쪽).

8) 『本邦社會事業概要』, 內務省社會局, 1922, 129쪽.

9) 『被虐待児童保護概況』, 東京府学務部社会課, 1939, 1쪽.

10) 일본에서 내무성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카가와현(香川県) 경부(警部), 경시청(警視庁) 특고과장(特高課長), 안보과장(保安課長), 시즈오카현(静岡県) 내무부장(内務部長)을 역임하였다. 1920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사무관과 총독관방 참서관으로 부임하였으며, 1923년에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11) 丸山鶴吉, 「児童保護事業に就하여 (二)」, 『매일신보』, 1921년 12월 6일 1면.

12) 『被虐待児童保護概況』, 1939, 1쪽.

13) 高橋靖幸, 「昭和戦前期の児童虐待問題と「子ども期の享受」」, 2018, 179~180쪽.

14) 村野薫, 『明治・大正・昭和・平成 事件・犯罪大事典』, 事件犯罪研究会, 2002, 516~517쪽 ; 高橋靖幸, 『昭

본토에서 내무성 사회국은 아동학대방지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경시청에서 학대아동을 조사하였다. 당시 경시청이 파악한 아동학대의 종류는 曲馬團, 輕業에 종사한 아동과 불구 및 기형아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파악된 학대아동수는 12,675명 정도였다.¹⁵⁾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무성 사회국은 아동학대방지법안을 작성하였다.¹⁶⁾ 작성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내무성 사회국에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였다. 1931년 6월 29일 사회사업조사회의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무성 각 국장과 과장,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방지법안을 수정하였다.¹⁷⁾ 1932년 내무성 사회국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내무성 사회국에서 제출한 12개의 아동학대방지법안은 1933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중의원 회의를 거쳤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아동학대문제와 아동노동혹사문제를 방지·금지하는 내용이었다.¹⁸⁾ 1933년 3월 11일 아동학대방지법안은 중의원 회의에서 上程 상정되고, 야마모토 다츠오(山本達雄) 내무대신이 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아동학대방지법안이 통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각 신문들은 보도하였다.¹⁹⁾ 중의원은 위 법안을 보고 경업, 곡마,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업무에 아동 사용을 절대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採決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무성 사회국은 수정의견에 대해 타협했고, 그 결과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²⁰⁾ 그럼에도 3월 18일 본회의에 참석한 나카노 유지로(中野勇治郎)는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주장으로 위 내용 중 제7조는 삭제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이 결정되었다.²¹⁾ 그 결과, 일제의 아동학대방지법은 1933년 10월 1일 법률 제40호로 공포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그 내용은 아동학대의 대상, 종류, 처벌 등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제1조 본 법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의 자를 말함.

제2조 아동을 보호할 책임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또는 그 監護를 게을리하여 형벌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지방장관은 아래와 의 처분을 할 것.

- 1) 아동을 보호할 책임있는 자에 대한 훈계를 가할 것.
- 2) 아동을 보호할 책임있는 자에 대한 조건을 붙여 아동감호를 하도록 할 것.
- 3) 아동을 보호할 책임있는 자에서 대하여 아동을 인수할 자를 그 친족, 기타 개인 가정 및 적당

和戰前期の児童虐待問題と「子ども期の享受」, 2018, 181쪽. 1930년 일본 도쿄 이타바시(板橋)에서 일어난 ‘이와노사카의 아동살인사건(岩の坂もらい子殺し事件)’으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 사건은 이 지역에서 1년 만에 41명의 아동이 살해된 사건으로,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어진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15) 「期待되는 児童保護法案」, 『중의일보』, 1930년 8월 15일 2면 ; 「児童虐待防止法案 來議會에 提出」, 『매일신보』, 1930년 8월 15일 1면 ; 「児童虐待防止法案來議會に提出, 内務省調査を進む」, 『京城日報』, 1930년 8월 15일 2면 ; 「児童虐待防止法」, 『朝鮮日報』, 1930년 3월 16일 1면.

16) 「話題-薄幸에 우는 어린이를 爲하야」, 『매일신보』, 1930년 9월 25일 1면.

17) 「児童虐待防止法案要綱可決」, 『매일신보』, 1931년 7월 2일 1면.

18) 「論說 児童虐待防止 案에 對하야」, 『中央日報』, 1932년 4월 7일 1면 ; 「児童虐待防止法案議會に提出」, 『朝鮮新聞』, 1932년 12월 3일 6면 ; 「児童虐待 防止法案 議會提出決定」, 『中央日報』, 1932년 12월 4일 1면 ; 「児童虐待法案 來議會提出」, 『中央日報』, 1932년 12월 13일 1면.

19) 「諸法案에 對하야 質疑後委員附托 十一日衆院本會議」, 『매일신보』, 1933년 3월 13일 1면 ; 諸種重要法案前途運命如何 大體는 通過」, 『中央日報』, 1933년 3월 15일 1면.

20) 「児童虐待防止案委員會開催」, 『朝鮮新聞』, 1933년 3월 17일 6면.

21) 『第六十四回 帝國議會 衆議院 少年教護法案委員會議錄(速記)第十八回』, 1933년 3월 8일.

한 시설에 위탁하는 것.

앞의 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한 처분을 위할 경우에 의해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있는 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닐 때 지방장관은 후견인에 인도할 것. 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지방장관이 아동보호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此限에 부재함.

제3조 지방장관은 앞 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아동이 14세에 달하였다할지라도 1년을 경과하기까지 그 사람에 대하여 앞 조의 규정대로 처분할 수 있음.

제4조 앞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ʼʼʼʼʼʼ가 정하는 대로 본인 또는 그 부양의 무자의 부담으로 할 것. 단, 비용부담을 하는 부양의무자는 민법 제955조 및 제956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자에 대해서 求償하는 것을 방해 못함.

제5조 앞 조의 비용은 道府縣에서 一時 이를 貸與支辨할 것.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지변한 비용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는 부현세 증수의 예에 의함.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변상을 얻지 못하는 비용은 도부현의 부담으로 함.

제6조 국고는 ʼʼʼʼʼ가 정하는 대로 도부현의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2분의 1이내를 보조함.

제7조 지방장관은 경업, 곡마, 또는 집마다 도로에서 행하는 모든 藝의 연출이나 물품판매나 그 외에 업무 및 행위로서 아동학대가 되고 또는 이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아동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할 수 있음. 앞항의 업무 및 행위 종류는 主務大臣이 정함.

제8조 지방장관은 제2조 혹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 또는 앞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지 혹은 제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當該 관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 혹은 거주지 또는 아동의 종업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증표를 휴대케 할 것.

제9조 본법 또는 본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이 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주 대신에 訴願할 수 있음.

제10조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지 혹은 제한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을 사용하는 자는 아동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앞의 항 처벌을 면할 수 없음. 단, 과실인 경우는 차한에 부재함.

제11조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 규정에 의한 당해 관리 혹은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절, 방해 혹은 기피하고 또는 그 심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진술을 하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답변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허위진술을 시키는 자는 5백원 이하 벌금에 처함.²²⁾

이밖에도 內務省令 第二十一號21호로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일) 아동의 불구기형을 관람에 供하는 행위

이) 걸식

삼) 輕業(땅재주 같은 것), 曲馬, 기타 위험한 업무로서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

사) 가가호호에 就하여 또는 도로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

오) 가가호호에 就하여 또는 도로에서 가요, 유예, 기타의 연기를 행하는 업무

육) 藝妓, 酌婦, 女給, 기타 酒間의 알선을 하는 업무

위 법은 아동에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불구자나 기형자를 관람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걸식은 하지 않아야 했다. 경업, 곡마 등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사용도 금지하였고, 집이나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연기를 행하는 업무도 금지시켰

22) 『勅令217號 兒童虐待防止法施行期日ヲ定ム』, 1933년 8월 1일,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다. 마지막으로 예기, 작부, 여급 등으로 주점에 알선하는 업무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아동의 학대상황을 나타낸 것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방지법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 주로 알려진 내용은 내무성령 제21호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이 1961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참고를 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3. 식민지 조선 내 아동학대방지법 요구

일제가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동보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부상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0년대 초에 결성된 소년단체들은 소년운동을 통해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조선인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조선인들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아동학대 상황을 신문에 게재하여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드러냈다.²³⁾

조선인들은 아동학대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같이 언급하였다. 첫 번째, 가정의 경우 역사에 나타난 아동학대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했으며, 올바른 자녀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²⁴⁾ 두 번째, 이미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이후 교육의 차별을 받고 있던 조선인들은 일본 본토의 초등교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조선인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전했으며, 아동이 취학하지 않는다면 공장에서 “건강”을 보낼 것으로 예견했다.²⁵⁾ 즉, 조선인들은 아동이 취학한다면, 굳이 공장으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 내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 <그림 1>에서 나타난다.



<그림 1> 식민지 조선의 아동학대²⁶⁾

23) 「兒童保護策(五)三,兒童虐待防止 續」,『朝鮮日報』, 1921년 7월 30일 1면.

24) 「자녀교육의방법(二)」,『동아일보』, 1925년 1월 22일 3면.

25) 「학대받는데이국민」,『동아일보』, 1925년 8월 7일 2면.

26) 「殘忍한兒童虐待」,『東亞日報』, 1924년 2월 22일 1면.

위 <그림 1>은 아동이 보통학교를 가는 그림이다. 그러나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데 아동들이 절벽을 올라 들어가는 모습은 입학시험이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즉, 조선인들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막고자 했으나 조선총독부의 교육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인이 입학했다라도 학교에서 일본인 교사들은 조선인을 내쫓는 일이 있었다. 그 예로 1927년 부산 목도에서 일본인 교사가 조선인 아동을 내쫓은 사건이다. 이에 조선인 학부형들은 경상남도 학무과장에게 거세게 항의하여 일본인 교사를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²⁷⁾ 이에 경남 고성군청년연맹은 연맹대회에서 “조선아동협회의 부산 목도 아동학대에 관한 건”을 다루었다.²⁸⁾ 조선아동협회는 조선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를 논의한 후 경고문을 경상남도에 발송하고, 사과를 받아냈다.²⁹⁾ 조선인들이 아동보호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소년운동의 영향에 있었던 결과였다.³⁰⁾

이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해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다. 1929년 함흥에 있는 제사소(製絲所)는 직공에 대한 학대와 노동이 과중하다고 하여 그 지역에서조차 노동력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공장은 강원도 통천군(通川郡)에서 감언이설로 아동 남녀 107명을 모집하여 노동으로 혹사시켰다. 과중한 노동을 견디지 못한 아동은 도망가기도 했다. 이 공장으로 보낸 부모들은 군면당국에 탄원하였고, 그 결과 공장취업을 알선했던 통천면장 김완갑(金琬甲)과 통천군 농회기수 함중규(咸中奎)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함흥에 가서 어린 여직공 17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일부 어린 직공들 중 도망가거나 자퇴하여 남은 68명을 귀환시켰다.³¹⁾ 이처럼 조선인들은 각 방면의 아동학대문제가 일어나면 항의하여 해결하여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일본 본토 내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아동학대방지법이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³²⁾ 특히 이들은 일본 본토 내에서 아동학대방지법이 논의될 때 식민지 조선에서는 세계 각국이 아동학대방지과 관련한 제도적·사회적 정비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을 전하였다.³³⁾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문제를 안타까워하는 한편, 아동보호단체에 지적을 하였다.³⁴⁾ 그리고 조선인들은 아동학대방지법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이 된다면 일본 본토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의무교육의 시설 촉진, 기성교육기관의 아동수용 능력 증진, 무산아동의 교육방침 수립 등의 내용과 함께 식민지 조선에 맞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⁵⁾ 이밖에도 조선인들은 일본의 공장법, 소작법 등 사회적 입법부터 제정해야 일본과 비슷한 범위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⁶⁾

27) 「處置陳情 문데의교원을 학부형회원들이 牧島兒童逐出事件」, 『東亞日報』, 1927년 6월 29일 5면.

28) 「劃時期的會合인 固城靑聯盟大會 決議事項卅四條」, 『朝鮮日報』, 1927년 7월 1일 1면.

29) 「朝鮮兒逐出事件固城에서聲討講演」, 『朝鮮日報』, 1927년 7월 1일 2면.

30) 「朝鮮教育問題 (六)」, 『東亞日報』, 1931년 12월 3일 5면.

31) 「職工虐待의工場으로부터 解放된少女工十七名」, 『朝鮮日報』, 1929년 12월 25일 7면.

32) 「兒童虐待防止 法案」, 『朝鮮日報』, 1930년 8월 17일 1면.

33) 「少國民保護訓練 世界各國의 본보기 (八)」, 『東亞日報』, 1932년 1월 16일 5면.

34) 「兒童虐待防止論」, 『東亞日報』, 1932년 9월 25일 1면.

35) 「論說 兒童虐待防止 案에 對하여」, 『中央日報』, 1932년 4월 7일 1면 ; 「兒童虐待防止法」, 『東亞日報』, 1933년 8월 2일 1면 ; 「兒童虐待防止 法の適用說」, 『조선일보』, 1933년 12월 19일 1면.

36) 「勞働者問題의 將來」, 『동아일보』, 1933년 8월 17일 1면 ; 「兒童虐待防止 法の適用說」, 『조선일보』, 1933년 12월 19일 1면

4. 조선총독부의 아동학대방지법 논의와 차별적 조치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아동학대방지법 요구를 수용하여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다. 1933년 12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1935년부터 실시하고자 공장법과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당시 와타나베 데츠오(渡邊鐵雄) 학무국장은 조선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예산문제가 있고, 조선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본과 달리 연령제한에 다르게 규정해야만 할 것으로 말했다.³⁷⁾ 그러나 1934년 6월 조선총독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방지법을 실시하지 않아 조선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³⁸⁾ 결국 아동학대방지법은 일본 본토에만 적용되어 식민지 조선에 시행되지 않았다.³⁹⁾

1935년 2월 조선총독부는 아동학대방지법과 소년교호(少年敎護)에 대한 법을 제정하지 않아 일본 척무성으로부터 소년교호법(少年敎護法) 실시에 관한 통첩을 접하자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 했다. 이미 일본 본토 내에 아동학대방지법, 소년구호법 등이 시행 중에 있었고, 대만에서도 교정원과 소년구호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와 대만에 시행되던 아동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난을 받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본토와 달리 소년교호법은 불량소년에 대한 사회교화 성격에 가까운 법이었다.⁴⁰⁾ 또한 당시 조선인들은 식민지 조선의 아동학대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는 기관이 없고, 아동학대방지에 노력하는 단체가 없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⁴¹⁾ 즉, 조선총독부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 본토와 대만의 아동관련 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식민지 조선에서 아동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8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일본 본토에서 정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안을 준비 중이라 하였다.⁴²⁾ 그러나 아동학대방지법은 예산관계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대신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37년에 꼭 시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무국과 협력하여 1935년 11월 1일부터 14세 미만의 조선인 학대아동을 조사한다고 하였다.⁴³⁾ 이에 경기도 경찰부는 관하 각 부, 군(府郡) 경찰서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아동학대 조사를 지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14세 이하의 아동을 비롯하여 사회통념상 아동보호할 책임을 가진 친권자, 후견인 동거자들이었다. 나아가 고용주들의 양육 아래 얼마나 학대를 받으며, 또 학대받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가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라고 명령하였다.⁴⁴⁾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아동학대조사에 대해 조선인 측은 얼마만큼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관심을 가졌다. 즉, 어떤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다고 말할 것이며, 학대받는 아동을 일일이 찾아가 그 상황을 조사할 것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⁴⁵⁾

그리고 학무국 사회과는 조선사회사업협회 주최로 열린 조선사회사업대회에서 결의된 내용

37) 「朝鮮 에도 兒童虐待防止法」, 『朝鮮日報』, 1933년 12월 17일 3면.

38) 「時期尙早理由로 少年敎護法不施行」, 『朝鮮日報』, 1934년 6월 29일 3면.

39) 「農家食糧差 押禁止法令」, 『朝鮮日報』, 1934년 8월 31일 1면.

40) 「少年保護法の實施 總督府에서準備」, 『朝鮮日報』, 1935년 2월 6일 1면.

41) 「어린이를 학대받고 보호합시다 (1)」, 『東亞日報』, 1935년 2월 9일 3면.

42) 「少年虐待防止法 朝鮮에도實施코저」, 『東亞日報』, 1935년 8월 28일 3면.

43) 「兒童虐待防止法 實施準備次調査」, 『朝鮮日報』, 1935년 9월 11일 3면 ; 「少年虐待事實 全朝鮮調査」, 『東亞日報』, 1935년 9월 13일 3면.

44) 「兒童虐待實情을 基本的으로調査」, 『朝鮮日報』, 1935년 9월 28일 3면.

45) 「兒童虐待調査와實際」, 『東亞日報』, 1935년 9월 29일 1면.

을 받았다.⁴⁶⁾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 구호법 실시
- 이. 방면위원회제도 확충
- 삼. 아동학대방지법 실시
- 사. 각도를 數區에 분하여 순차로 사회사업대회를 개최할 것⁴⁷⁾

위 내용 중 아동학대방지법 실시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1935년 12월 말까지 조사를 끝난 후 머지 않아 시행할 것으로 결정하였다.⁴⁸⁾ 조선총독부가 12월말까지 조사한 학대아동의 수는 일본인 여아 5명, 조선인 남아 71명과 여아 54명으로 총 130명이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형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아동 17명, 보호해타(保護懈怠)는 26명, 불구기형 13명, 결식 20명, 가요유예(歌謠遊藝) 14명, 예기작부 여급 6명, 물품판매 37명이었다.⁴⁹⁾ 이 수는 당시 조선인의 인구수에 비하면 조사가 조선인들의 우려에 따라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1936년 1월 아동학대상황조사 결과 강원, 충북, 함북을 제외한 각 지방의 학대건수는 총 4,528명에 달하였기 때문이다.⁵⁰⁾ 또한 1936년 3월 조사에 따르면 남자가 4,270,178명이고, 여자는 4,075,404명으로 합계 8,345,582명에 달하였다.⁵¹⁾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아동학대상황조사에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1937년에 「아동학대방지령」을 제정할 것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계획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과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정무총감이 부임한 이후 조선의 사회사정에 주목해 이루어졌다. 미나미는 사회과를 학무국으로부터 다시 내무국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사회과와 사회교육과로 나누었다. 당시 이 시기는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 내 사회적 기구를 정비하여 인적동원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1937년 안에 아래와 같은 법들이 실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 일. 사상범보호시찰령(制令)
- 일. 광부노역부조규칙(府令)
- 일. 미성년자금주금연법(制令)
- 일. 모자보호규칙(府令)
- 일. 아동학대방지령(制令)
- 일. 구호령(制令)⁵²⁾

하지만 총독부는 모자보호규칙과 아동학대방지령을 시행하지 않았다. 1937년 3월 2일에 개

46) 「細窮民救護法案 兒童虐待防止法實施」, 『東亞日報』, 1935년 10월 5일 3면.

47) 「朝鮮에도 不遠實施될 兒童虐待防止法案」, 『매일신보』, 1935년 10월 10일 5면.

48) 「兒童虐待防止法 朝鮮內實施」, 『東亞日報』, 1935년 10월 10일 3면.

49) 「兒童虐待防止法에 適用兒百卅餘名」, 『조선중앙일보』, 1935년 12월 23일 4면 ; 「兒童虐待防止 法令實施準備」, 『조선중앙일보』, 1935년 12월 30일 2면.

50) 「兒童虐待防止令實施問題」, 『朝鮮日報』, 1936년 1월 11일 1면.

51) 「兒童虐待防止法令」, 『朝鮮日報』, 1936년 3월 28일 3면 ; 「兒童虐待防止令實施問題」, 『朝鮮通信』 2919, 朝鮮通信社, 1936.

52) 「基本體系세워 組織整備 社會事業擴充具現에 社會政策準備工作漸就緒 今年中實現될 諸案件」, 『매일신보』, 1937년 2월 2일 2면.

최된 경기도회에서 조병상(曹秉相)은 아동학대방지법을 시급히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이키켄(佐伯顯) 내무부장은 이미 총독부에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실시하게 될 것으로 둘러댔다.⁵³⁾ 그럼에도 아동학대방지법은 실시되지 않았고, 결국 이 법을 시행한다는 말은 기약없는 약속일 뿐이었다. 이에 조선인들은 아동학대방지회라도 설치하여 아동보호의 시설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⁵⁴⁾

특히 전시총동원체제에 돌입했던 시기만큼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총후국민단결”을 견고히 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배양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여 탁아시설과 아동학대방지시설, 소년교호시설 정비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기전을 각오하는 비상시국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보건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⁵⁵⁾

그러나 실제로 조선인 아동에게 도움되는 법안이나 시설은 정비되거나 확충되지 않았다. 먼저, 미성년자금주금연령과 감화원령 등은 사회교화로서 시행되면서 불량소년을 대상으로 ‘선량한 국민’을 만들고자 했다.⁵⁶⁾ 결국, 구호법, 모자보호법, 사회사업법, 아동학대방지법, 노동아동취업연령, 시간제한 관계법, 소년법, 소년교호법 등은 1930년대부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다고 말만 했을 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었다.⁵⁷⁾ 즉,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려던 조선총독부는 일제에 충성하는 “제국신민”만을 기르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공장에서 이미 노동을 하고 있던 조선인 아동들은 이미 착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이 특수하다는 이유, 즉 일본 본토보다 여러방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들을 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1944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모자보호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세가 밀리자 식민지 조선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동과 노인 또는 불구자 등을 대상으로 구호하여 “총후반도의 전적을 증강”하고자 했다.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씩씩하고 명랑하게 대동아전쟁 완수에 매진”케 하고자 했다. 이 법의 대상은 13세 이하의 어린아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불구폐질자로서 현재 적당한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생활이 곤란한 자였다. 일제는 이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고 의료구호를 돌보아주며 또 직업 혹은 그 외의 生業을 알선해주었다. 동시에 이들이 사망할 경우 나라에서 매장하였다. 임산부들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들을 産病院에 입원시켜서 튼튼한 아기를 낳게 하고, 또는 산파를 보내 어린아이를 낳도록 했다.⁵⁸⁾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할 인적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또한 일제는 “오직 승리를 획득할 전열에도 모든 총력을 결집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조선구호령을 실시했다고 하면서 아동을 “황군강병”이 될 어린이로 보았다.⁵⁹⁾

즉, 일제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여 일본 본토에서 시행하였으나 식민지 조선에 시행될 것처럼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들은 조선인을 기만하는 태도였다. 결과적으로 1944년

53) 「京畿道會(第九日) 各道會論戰白熱化 社會事業、衛生問題로 激勵、追究의 舌戰 兒童虐待防止와 孤兒保護等 焦眉懸案에 論鋒集注」, 『매일신보』, 1937년 3월 4일 3면.

54) 「兒童을 保護하자 (2) 조선에도 꼭 있어야 할 아동학대방지회」, 『東亞日報』, 1938년 5월 18일 5면.

55) 「社會事業施設을 擴充 銃後의 生活安定圖謀」, 『朝鮮日報』, 1938년 9월 9일 3면.

56) 신정운, 「일제하 미성년자의 범죄문제와 조선총독부의 대책」, 『역사와 세계』 55, 효원사학회, 2019.

57) 「兒童保護施設의 缺如」, 『東亞日報』, 1939년 5월 6일 1면.

58) 「待望의 朝鮮救護令 - 來 十月 一日부터 實施될 豫定」, 『매일신보』, 1943년 3월 20일 2면.

59) 「國家의 보배母子를 保護-孤兒13歲까지 育成 救護令 社會事業도 指導運營」, 『매일신보』, 1944년 3월 2일 3면.

일제는 아동학대방지법과 모자보호법을 아우르는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지만 일본 본토와 내용이 달랐고, 아동을 금지하는 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은 형식상의 법이었다. 오히려 일제가 제정했던 아동학대방지법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때 아동복지법에 영향을 주었다.

5. 결론

첫째, 일제는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식민지 조선에도 제정될 것처럼 이야기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인들은 식민지 조선에 맞는 아동학대방지법 내용들을 제안하면서 총독부에게 요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수용하여 아동학대상황조사를 하였지만 실제로 법안제정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조선인들은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조선총독부에게 요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안을 제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산문제와 조선의 특수사정이라는 핑계를 대며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한다고 지속적으로 선전하였다. 하지만 선전에만 그쳤을 뿐 1944년까지 총독부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학대방지법과 모자보호법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비하는 듯한 활동을 취했으나 이러한 태도는 조선인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 내용에서 식민지 조선에 시행된 조선구호령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구호령은 아동학대방지법에 나타난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 조차 포함하지 않았다. 이 내용들은 1961년 한국의 아동복지법에 영향을 주었다.

■ 참고문헌

『경성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중앙일보』, 『조선신문』
『官報』
『조선총독부관보』
『被虐待兒童保護概況』, 東京府學務部社會課, 1939.
『社會局事務概要』, 『社會局社會事業概要』

문헌

朴貞蘭, 『韓國社會事業史』, ミネルブア書房, 2007.
生江孝之, 『兒童と社會』, 兒童保護研究會, 1923.
이운진, 『일제하 유아보육사 연구』, 혜안, 2006.
전상숙, 『조선총독정치연구』, 지식산업사, 2012.
村野薫, 『明治・大正・昭和・平成 事件・犯罪大事典』, 事件犯罪研究会, 2002.
필립 아리에스 저,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허광무, 『일본제국주의 구빈정책사연구』, 선인, 2011.

논문

-한국-

김경우,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35, 한국행정사학회, 2014.
김인수, 「총력전기 식민지 조선의 인류(人流)와 물류(物流)의 표상정치」, 『서강인문논총』 4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제정, 「식민시기 조선총독부의 조선특수성론」, 『지역과 역사』 43, 부경역사연구소, 2018.
심정택, 「해방전후기의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4,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7.
이운진, 「한국 영유아보육정책의 고찰과 함의(含意)」, 『연세교육연구』 16(1),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정우열, 손능수,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조선구호령 제정 이후의 구빈행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2, 한국행정사학회, 2008.
황보영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연혁적 고찰」, 『육아지원연구』 9(2), 한국육아지원학회, 2014.

-일본-

高橋靖幸, 「明治期における「兒童虐待」の社会的構築」, 『子ども社会研究』 19, , 2013.
高橋靖幸, 「昭和戦前期の兒童虐待問題と「子ども期の享受」」, 『教育社会学研究』 102, 日本教育社会学会, 2018.
高玉和子, 「兒童虐待防止法の成立過程について」, 『保育論叢』 20, 文教大学女子短期大学部児童科, 1985.
杉田菜穂, 「日本における兒童権論の展開と社会政策-1933年兒童虐待防止法を見据えて-」, 『経済学雑誌』 108(4), 大阪市立大学経済学会, 2008.

安岡憲彦，「戦時局下の貧困児童への保護施策-児童虐待防止法の制定をめぐって-」，『近代東京の下層社会：社会事業の展開』，明石書房，1999.

田中亜紀子，「昭和戦前期の未成年者処遇制度：昭和八年児童虐待防止法案審議を主たる対象として」，『大阪大法学』63(3・4)，大阪大学法学会，2013.